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1313-01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19. 12.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연구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책임자 : 우석대학교 이기성 교수

공동연구원 : 동국대학교 손창균 교수

연구보조원 : 동국대학교 우영제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요약)

□ 진단 개요

- (진단목적) 국가승인 통계인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통계작성 전반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 품질 모니터링 중 모집단 구축방안 및 응답률 저조 등 문제점 파악('19.7)
- (진단대상)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IBK기업은행)
- (진단기간) 19.9.17. ~ 12.16.(약 3개월)
- (근거법령) 통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4조
- (진단주체) 통계청* 및 외부전문가(우석대 이기성 교수) 공동진단
 - * 품질관리과, 통계조정과, 행정자료관리과, 마이크로데이터과, 표본과, 통계방법연구실
- (진단방법) 수시통계품질진단 절차에 따라 5개 부문으로 진단

품질관리기반 점검 / 세부 작성 절차별 체계 점검 /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진단 / 조사결과 정확성 점검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FGI)

- 기업통계등록부(SBR) 및 행정자료 활용 방안 검토
- 마이크로데이터 등을 점검하여 조사결과 신뢰성 검토

□ 진단 결과: 10개 개선과제 도출

- 통계작성 기획(1개), 통계설계(3개), 자료수집(2개), 자료처리(2개), 문서화 및 자료제공(1개), 사후관리(1개)

⇒ 주요 진단 결과 참조

□ 향후 추진 계획

- (통 계 청) 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과제 송부(작성기관)
- (작성기관) 개선과제 이행계획을 수립 및 제출(통계청)
- (통 계 청)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 매년 3월, 9월 기준

〈 주요 진단 결과 〉

○ 통계작성 기획 단계 (1개)

- (공표시기 준수) 사전에 공표일정을 예고하고 공표일정 준수

○ 통계설계 단계 (3개)

- (표본추출틀 변경)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대신 기업통계등록부(SBR)로 변경
- (표본설계 개선) 층화기준(종사자수 → 매출액) 개선, 가중치 및 추정식 개선, 표본규모 검토 및 산출식 제시, 주요 변수 상대표준오차 산출 및 공표범위 검토
- (조사항목·조사표 개선) 전문가 및 통계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조사표 개선

○ 자료수집 단계 (2개)

- (응답률 제고) 무응답 특성 분석 및 paradata 관리 등을 통한 원표본 대체 최소화 및 응답률 제고
-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 반영) 전문조사업체에 업무 위탁 시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 반영

○ 자료처리 단계 (2개)

- (자료 분석 강화) 이상치 탐색 등 자료에 대한 분석 강화
- (자료 검증 강화) 집계결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최종 자료에 대한 검증 강화

○ 문서화 및 자료제공 (1개)

- (통계작성 자료의 문서화) 통계작성 변동사항 및 절차별 업무매뉴얼 문서화, 홈페이지 조사일정 등 수정

○ 사후관리 (1개)

- (통계 활용 확대) 결과 홍보 및 활용 강화

품질진단 대상통계 개요

- 통계명(작성기관)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IBK기업은행)
- 작성목적 : 본 조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작성주기 : 1년
- 작성내용 : 일반사항(18개 문항), 경영상황 및 자금전망(12개 문항), 신규자금 조달 현황(35개 문항), 향후 조달 계획(1개 문항), 자금 운용 현황(3개 문항), 판매 및 구매자금 결제 현황(9개 문항), 은행 이용 실태(6개 문항), 기술크금융, M&A 등 기타(15개 문항), 애로 및 건의사항(1개 문항)
- 작성대상 : 쏘산업의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표본설계
 - 모집단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표본추출틀 :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과 담배 제조업(C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C19), 항공 운수업(H51), 협회 및 단체(S94)를 제외한 나머지 전업종
 - 사업체 구분이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제외하여 기업체 단위로 변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범주 기준에 들지 않는 기업체는 제외함
- 표본추출단위 : 기업체
- 표본추출방법 : 제조업과 비제조업 각각의 중분류 업종별로 1차 층화, 종사자 규모에 따라 2차 층화 후 단순임의추출
- 표본규모 : 4,500개 중소기업(제조업 2,000개, 비제조업 2,500개)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기관 : 전문조사업체(용역)
- 통계작성체계 : 기업체 → 조사원 → 전문조사업체(용역) → IBK기업은행
- 결과공표
 - 공표주기 : 1년
 - 공표시기 : 조사기준년도 익년 9월
 - 공표방법 : 보도자료, 인터넷게재, 보고서발간(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보고서)
 - 공표범위 : 전국,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등

목 차

I . 진단 개요	1
II . 부문별 진단 결과	6
1. 품질관리기반 점검	6
2. 세부 작성 절차별 체계 점검	7
3.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진단	16
4. 조사결과 정확성 점검	49
5.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FGI 실시)	62
III . 행정자료 활용방안 검토	66
IV . 결론	68
[붙임1]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74
[붙임2] 세부작성절차별 점검표	79
[붙임3] 품질 모니터링 결과	103
[붙임4]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	112
[붙임5] 조사표 검토결과	118
[붙임6] 마이크로데이터 점검결과	121
[붙임7] 항목별 활용가능 행정자료 및 판단결과표	123
[붙임8] 파라미터 양식	127
[붙임9]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범위	129

표 목 차

표 1-1. 진단팀 및 진단분야	4
표 2-1.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통계작성체계	6
표 2-2. 조사문항 변동 내역	10
표 2-3.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목표표본	12
표 2-4.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완료 표본	12
표 2-5.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목표표본과 조사완료표본 차 분포	13
표 2-6.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17
표 2-7. 제조업의 업종 중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18
표 2-8. 비제조업의 업종 중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19
표 2-9. 모집단 구축방안	20
표 2-10. 표본추출틀, 조사모집단 정의 및 층화 기준에 따른 모집단 크기 비교 ...	21
표 2-11.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층화 기준	22
표 2-12.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23
표 2-13.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24
표 2-14.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25
표 2-15.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	26
표 2-16.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	27
표 2-17.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	28
표 2-18.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29
표 2-19.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30
표 2-20.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31
표 2-21.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층화 기준	32
표 2-22.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조사모집단 분포 ...	33
표 2-23.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조사모집단 분포 ·	34
표 2-24.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조사모집단 분포	35
표 2-25.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종사자 수	36
표 2-26.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종사자 수	37
표 2-27.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종사자 수 ...	38
표 2-28.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매출액	39
표 2-29.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매출액	40

표 2-30.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매출액	41
표 2-31. 표본크기의 변화에 따른 상대표준오차	43
표 2-32. 주요 항목별 제조업 비중	44
표 2-33. 업종 대분류별 계획 중인 외부자금(은행) 조달액(합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48
표 2-34. 통계청 오차수준 권고안	49
표 2-35. 마이크로데이터와의 일치율	49
표 2-36. 총 차입금액과 총 대여금액 항목무응답률	51
표 2-37. 총차입/대여금액 관련 조사항목의 항목무응답률	52
표 2-38.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응답률	53
표 2-39.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접촉 조사대상 수	54
표 2-40.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평균 접촉표본 수	55
표 2-41.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신규대출 금리와 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비교	59
표 2-42. 2018년 대비 2019년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외부자금조달 사정 분석 ...	60
표 2-43. FGI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65
표 4-1. 표본설계부분 세부 개선과제	68
표 4-2.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개선과제 및 개선 방안	73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

◇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통계법 제10조에 의해 `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임

I 진단 개요

1. 진단 개요

- (진단목적) 국가승인통계인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IBK기업은행)의 통계작성 전반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진단대상)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IBK기업은행)
 - (근거법령) 통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4조
 - (진단주체) 통계청* 및 외부전문가(우석대 이기성 교수) 공동 진단
- * 품질관리과, 통계조정과, 행정자료관리과, 마이크로데이터과, 표본과, 통계 방법연구실

2. 진단대상 통계

- 통계명(작성기관)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IBK기업은행)
- 작성목적 : 본 조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작성주기 : 1년
- 작성내용 : 일반사항(18개 문항), 경영상황 및 자금전망(12개 문항), 신규자금 조달 현황(35개 문항), 향후 조달 계획(1개 문항), 자금 운용 현황(3개 문항), 판매 및 구매자금 결제 현황(9개 문항), 은행 이용 실태(6개 문항), 기술 금융, M&A 등 기타(15개 문항), 애로 및 건의사항(1개 문항)
- 작성대상 : 쏘산업의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표본설계

- 모집단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표본추출틀 :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과 담배 제조업(C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C19), 항공 운수업(H51), 협회 및 단체(S94)를 제외한 나머지 전업종
- 사업체 구분이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제외하여 기업체 단위로 변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범주 기준에 들지 않는 기업체는 제외함

- 표본추출단위 : 기업체
- 표본추출방법 : 제조업과 비제조업 각각의 중분류 업종별로 1차 층화, 종사자 규모에 따라 2차 층화 후 단순임의추출
- 표본규모 : 4,500개 중소기업(제조업 2,000개, 비제조업 2,500개)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기관 : 전문조사업체(용역)

■ 통계작성체계 : 기업체 → 조사원 → 전문조사업체(용역) → IBK기업은행

■ 결과공표

- 공표주기 : 1년
- 공표시기 : 조사기준년도 익년 9월
- 공표방법 : 보도자료, 인터넷게재, 보고서발간(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보고서)
- 공표범위 : 전국,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등

3.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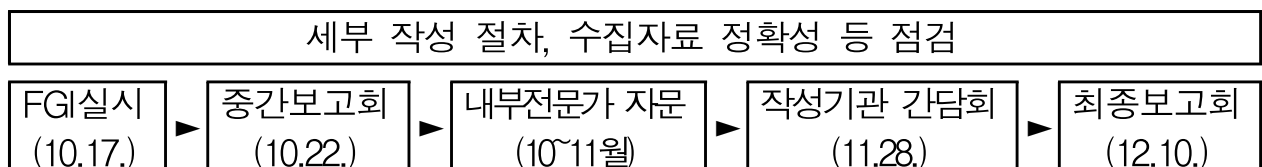
□ (추진배경) 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 발굴

□ (실시 결정) 「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결정(8.27.)

□ (추진 경과) 통계법 및 수시통계품질진단 절차에 따라 추진(9월~12월)

○ (진단 착수) 내·외부진단팀을 구성하고 수시통계품질진단 착수(9.17.)

○ (진단 실시) 5개 부문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심층 진단(9월~12월)



4. 세부 진단 방식

□ 통계청 및 외부전문가(진단팀) 공동 진단 실시

○ (통계청) 통계 기획·설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실시

- 1) 품질관리기반 현황 점검 및 통계작성기관 담당자 면담 실시
 - 통계청 승인사항(작성방법, 조사표, 결과표 등) 준수 여부 확인
 - 통계작성기관 자료 요청 및 진단 관련 협의
- 2) 청내 관련과(통계조정과, 행정자료관리과, 마이크로데이터과 등) 내부전문가 자문 실시
 - 조사표 설계, 행정자료 활용방안 검토 및 마이크로데이터 점검 등
- 3) 작성기관 방문, FGI 및 작성기관 간담회 참석, 중간·최종보고서 검토, 진단 결과 검토 및 확인 등 실시

○ (진단팀) 품질관리기반 분석 및 통계작성절차에 따라 5개 부문 진단

- 1) 작성기관 제출 자료 및 통계청 내부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모집단 구축, 표본설계, 추정절차 적합성 등에 대한 추가 분석 실시
- 2) 이용자 및 작성기관 의견 수렴
 - 전문이용자 및 일반이용자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주요 이용자의 이용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파악
 - 작성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진단결과 및 개선방안을 작성기관에 환류하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종 확정
- 3) 해당 통계의 현황 및 개선과제 등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 착수보고, 중간 및 최종보고회 실시
 - 진단부문별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제시, 발전전략 및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표 1-1> 진단팀 및 진단분야

소속	진단팀	진단 분야
통계청	품질관리과	수시통계품질진단 총괄
	통계조정과	통계작성 기획 자문
	표본과	표본설계 자문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 활용가능성 검토
	마이크로데이터관리과	마이크로데이터 점검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표 검토
한국조사연구 학회	외부전문가(진단팀)	5개 부문에 대한 심층 진단

5. 진단 수행범위

- 통계작성절차에 따라 5개 부문*으로 진단하고, 품질 모니터링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모집단 구축 및 관리방법, 응답률 저조 및 무응답 관리 등)를 심층진단

* 품질관리기반 점검, 세부 작성 절차별 체계 점검,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진단, 조사결과 정확성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FGI 실시)

1) 품질관리기반 진단

- 통계작성 담당자 면담 및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분석 <붙임 1>

2) 세부작성절차별 진단

- 세부작성 절차별 점검 <붙임 2>

가. 통계작성 기획 → 나. 조사통계 설계 → 다. 자료수집 → 라. 자료 입력 및 처리 → 마.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 바. 문서화 및 자료제공 → 사. 사후관리

3)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진단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나. 목표오차 및 표본규모 → 다. 표본추출방식 → 라. 표본배정방식 → 마. 가중치 및 추정식 → 바. 공표

- 모집단 특성 분석 및 변경된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표본추출틀, 층화방법 제시
- 표본크기 확대 검토 및 산출식, 가중치 및 모수 추정식 등 검토

4) 조사 결과 정확성 점검

가. 마이크로데이터 점검 → 나. 응답률 분석 → 다. 표본관리 → 라. 이상치 분석 → 마. 관련통계와 비교 → 바. 수준분석

- 작성기관으로부터 마이크로데이터 및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결과 정확성·추정 절차의 적합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 (품질 모니터링 시 도출된 문제점 심층 진단) <붙임 3, 붙임 6>

5)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표적집단면접 실시)

-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신뢰성 등 의견수렴

☐ 행정자료 활용방안 검토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추출틀 및 조사항목 대체가능성 검토 <붙임 7>

Ⅱ 부문별 진단 결과

1. 품질관리기반 점검

□ 통계작성체계 검토 결과

- IBK기업은행 담당자의 통계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조사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전문조사업체에 업무 위탁 시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통계작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조직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임 <붙임 1>

<표 2-1>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통계작성체계

구분	기관명	비고
-조사용역 발주, 통계작성 승인 관련 업무 -조사 홍보 및 중소기업체 협조 -활용방안 마련 및 정책반영 -통계분석 및 공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인력 및 통계업무전담 정도 : 총괄(1명,10%), 실무(1명,50%)
-조사 기획 및 총괄 -설문 작성, 표본 설계 -현장조사, 자료처리 및 결과표 작성	전문조사업체	* ('19) 한국기업데이터
-조사자료 분석 및 최종보고서 작성	공 동	

□ 개선 방안

- 일관성 있는 통계 생산과 더불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통계인력 보강이 필요함
- 작성기관이 전문조사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 <붙임 4>」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작성 절차별 체계 점검

<세부 작성 절차별 점검>

가. 통계작성 기획 → 나. 조사통계 설계 → 다. 자료수집 → 라. 자료입력 및 처리 → 마.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 바. 문서화 및 자료제공 → 사. 사후관리

가. 통계작성 기획

□ 통계작성 승인사항 검토 결과

- (조사시기)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조사실시 기간에 대한 변경 승인(1.1~6.30. → 5~7월, '19.5.23.)을 받았으나, 홈페이지에는 4~7월로 게시
- (공표시기) 9월 공표로 승인받았으나, 공표일정 미준수(홈페이지 게시 및 간행물 발간(10월), KOSIS 미입력)
- (표본추출방법) 1·2차 층화 후 단순임의추출하는 것으로 승인 받아 통계설명자료에 해당 내용을 수록하였으나, 표본설계 및 실제 조사에서는 각 층에서 계통추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표항목)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공표시 간행물의 모든 통계표의 항목에 모집단 기업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승인된 결과표에는 해당항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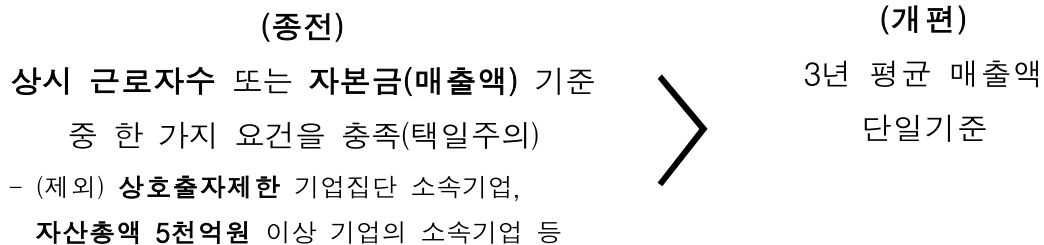
□ 통계작성 개편작업 검토 결과

- 중소기업 정의가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조사기획 및 조사표 설계 시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의견 파악 및 반영 미흡

□ 개선 방안

- 승인사항 준수 및 조사 현황에 맞게 변경 승인 검토 후 통계설명 자료와 홈페이지 내용 수정
-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 중소기업의 정의에 따라 통계작성 방법을 개편하고, 개편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개선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용자 풀 관리

※ <참고> 중소기업 범위 개편 내용(2015.1.1. 시행)



- 배경: 근로자·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input)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① 자본금이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기초로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 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②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인위적**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하며,
 -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추가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형태를 전환**(정규직 → 계약직)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 ③ 중소기업 **졸업 기업**이 다시 **1년만**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유예제도로 인해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하며
 -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4년 단위로 상시근로자를 축소(정규직의 일용직 전환)하는 등 **악의적 방법**을 활용할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음

< 개편 전 후 중소기업 기준 비교 >

개편(매출액)	업종(KSIC 10차*)	종전 기준
1,500 억원	제조업(6개)	근로자 300인 or 자본금 80억원
	제조업(12개)	
1,000 억원	농·임·어업	근로자 200인 or 매출 200억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도매·소매업	
	광업	
	건설업	근로자 300인 or 자본금 30억원
800 억원	제조업(6개)	근로자 300인 or 자본금 80억원
	운수업 및 창고업	근로자 300인 or 자본금 30억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E36 제외)	근로자 100인 or 매출 100억원
	정보통신업	근로자 300인 or 매출 300억원
600 억원	제조업(1개)	근로자 100인 or 매출 100억원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N76제외)	근로자 300인 or 매출 300억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00 억원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200인 or 매출 200억원
	금융·보험업	근로자 100인 or 매출 100억원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근로자 50인 or 매출 50억원
	임대업	

· 출처: [보도자료]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13.12.11)

* 보도 당시 표준산업분류(KSIC) 9차 기준으로 비교한 것을 10차 기준에 맞춰 수정

나. 조사통계 설계

□ 통계작성 대상 검토 결과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표본추출단위는 기업체이지만, 표본 추출틀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회사법인 중 사업체 구분이 공장, 지사(점), 영업소 및 외국법인의 본·지점이면 제외 후 기업체 단위로 변환

□ 조사표 구성 검토 결과

- 2019년 조사항목 수는 100개로 2018년에 비해 2개가 증가하였으며, 86개 문항이 유지되었음
- 변동 문항: 신규(4개), 삭제(2개), 수정·보완(8개)

<표 2-2> 조사문항 변동 내역

분류	'18년 조사	'19년 조사	분류				비고
			삭제	신규	보완	유지	
일반사항	18	18			1	17	- (보완)상장 및 외감 여부
경영상황 및 자금전망	12	12			2	10	- (보완)전년 대비 올해의 외부자 금조달 사정 - (보완)올해 대비 내년의 외부자 금조달 사정
신규자금 조달 현황	35	35			2	33	- (보완)주거래은행에서 신규대출 받지 않은 이유 - (보완)주식·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계획
향후 조달 계획	1	1				1	
자금 운용 현황	3	3				3	
판매 및 구매자금 결제 현황	7	9		2	2	5	- (신규)판매대금 수취 여부 - (신규)구매대금 결제 여부 - (보완)판매대금 수취 형태 - (보완)구매대금 결제 형태
은행 이용 실태	6	6				6	
기술금융, M&A 등 기타	15	15	2	2	1	10	- (보완)클라우드 펀딩 기반을 통 한 자금조달 경험 - (삭제)무인점포 방문 시 이용 계획 서비스 - (삭제)무인점포 방문 시 예상되 는 불편사항 - (신규)상생결제 방식 경험 여부 - (신규)상생결제 방식에 의해 받 은 대금의 비율
애로 및 건의사항	1	1				1	
계	98	100	2	4	8	86	

□ 개선 방안

-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이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되었고, 표본추출단위가 기업체이므로 기업체의 매출액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참고> 중소기업 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

- 표본추출틀을 전국사업체조사에서 SBR로 변경한 결과,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보다 기업수 및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
 - '17년 중소기업수(비율): (기존)373만개(99.9%)→(신규)630만개(99.9%) / '17년 중소기업 종사자 수(비율): (기존)1,553만명(89.8%)→(신규)1,599만명(82.9%)
 - 주요 요인: 비활동 기업 및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되었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 포함

- 조사표 변경시 이용자 의견 반영이 필요함
 - 보기항목, 질문표현 등의 검토를 통한 조사표 개선이 필요함
- <붙임 5 참고>
- 경영상황 및 자금전망 1개 항목(외부차입금 유무), 신규자금조달현황 2개 항목(기업공개/상장 및 유상증자 경로, 계열사 여부) 등 조사 항목에 대한 행정자료 대체 가능여부 검토 필요 <붙임 7 참고>

다. 자료수집

□ 검토결과

- 조사표에 면접일시, 면접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파라미터를 관리하지 않음
- 2019년 조사 기준 설계표본수(4,500개)와 조사완료 표본수(4,601개)가 불일치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음
 - 오버샘플링방식이 아닌 유고발생시 대체표본리스트를 활용하여 표본을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완료한 표본 수가 목표표본 수보다 101개 더 조사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제조업의 경우, 목표표본보다 57개가 더 조사되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8개가 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남

- 업종을 달리하여 대체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부재하며, 정확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2-3>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목표표본

(단위 : 개)

구분		종사자규모						합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C	제조업	404	361	461	335	283	156	2,000
F	건설업	60	65	68	46	49	32	320
G	도매 및 소매업	81	62	77	41	33	0	294
H	운수업	32	37	49	40	42	43	243
I	숙박 및 음식점업	78	49	39	23	17	0	20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33	46	35	36	22	20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	23	26	0	0	0	7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	40	66	32	27	17	227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6	36	49	43	45	30	239
P	교육 서비스업	48	40	37	18	0	0	143
Q	보건업	72	62	62	46	34	13	28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6	22	22	18	22	0	120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	37	38	20	0	0	136
합계		995	867	1,040	697	588	313	4,500

<표 2-4>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완료 표본

(단위 : 개)

구분		종사자규모						합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C	제조업	412	374	484	346	287	154	2,057
F	건설업	60	64	71	49	52	27	323
G	도매 및 소매업	84	64	84	39	29	0	300
H	운수업	39	37	49	41	39	46	251
I	숙박 및 음식점업	57	51	42	30	18	0	198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4	34	48	36	35	21	20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	25	24	0	0	0	7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6	40	69	32	29	15	231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38	49	48	44	29	245
P	교육 서비스업	54	39	38	12	0	0	143
Q	보건업	72	63	62	57	40	13	30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0	22	24	17	19	0	122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	38	45	14	0	0	138
합계		1,005	889	1,089	721	592	305	4,601

<표 2-5>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목표표본과 조사완료표본 차 분포

(단위 : 개)

구분		종사자규모						합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C	제조업	-8	-13	-23	-11	-4	2	-57
F	건설업	0	1	-3	-3	-3	5	-3
G	도매 및 소매업	-3	-2	-7	2	4	0	-6
H	운수업	-7	0	0	-1	3	-3	-8
I	숙박 및 음식점업	21	-2	-3	-7	-1	0	8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1	-2	-1	1	1	-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2	2	0	0	0	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3	0	-2	2	-4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2	0	-5	1	1	-6
P	교육 서비스업	-6	1	-1	6	0	0	0
Q	보건업	0	-1	0	-11	-6	0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0	-2	1	3	0	-2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1	-7	6	0	0	-2
합계		-10	-22	-49	-24	-4	8	-101

□ 개선 방안

- 면접소요시간, 평균방문횟수 등 파라데이터를 관리하여 불응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원 업무량 측정 등의 자료로 활용

<붙임 8> 통계청 파라데이터 양식 참조

- 명확한 표본대체지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조사 표본 명부를 엄격하게 관리
 - 전체 목표 표본 수 보다는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목표 표본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라. 자료입력 및 처리

□ 무응답 실태 및 처리방법 검토 결과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는 무응답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금리 응답 거절로 인해 관련 문항(문9, 문14-3, 문16-2, 문19-2)에 일부 항목무응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무응답 발생시 무응답 처리 지침에 따라 무응답 처리 하고 있으나, 무응답 실태를 별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무응답 처리 방법>

1) 항목무응답

- 항목무응답 발생 시 조사원 재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항목무응답 내용 확보
 - 재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항목무응답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용역수행사(한국기업데이터*) 등의 2차 자료 활용
 - 항목무응답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목무응답 처리
- *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정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확인시스템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및 우리은행, 농협,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수집되며, 금융감독원의 허가 하에 활용 가능

2) 단위무응답

- 단위무응답으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대체표본 제시 및 대체표본의 사용 순서(원표본과 총화변수 및 정렬변수가 동일하면서 가장 가까운 표본) 지정
- 2018년 기준 단위무응답률이 매우 높음(40% 이상)으로 파악됨

□ 개선 방안

- 단위/항목 무응답 처리에 대한 정보를 통계 이용자들에게 제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한 비율 등)
- 단위/항목 무응답의 원인 파악 및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필요

마.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 검토 결과

- 전년도 통계, 2차 자료* 및 한국은행·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기관 발간 통계와 비교하여 최종 통계자료의 정합성 및 현실성 검증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용역수행사 보유 DB 등
- 예를 들어, 본 조사와 유사항목(경영상황 전망, 자금수요 전망)을 조사하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비교 검토

□ 개선 방안

- 유사 통계 및 관련 자료와 비교시, 조사대상, 조사기준 시점, 문항 구성 등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의 경우, 본 조사와 유사항목(경영상황 전망, 자금수요 전망)의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항목의 특성과 비교기준의 차이*로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려움

* 비교기준 차이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전년대비 전망),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전월대비 전망)

바. 문서화 및 자료제공

□ 검토 결과

- 통계작성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이나 통계작성 절차별 업무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지란이 없어 통계공표 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지 않음
- 현재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어 통계의 활용이 제한적이며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방안도 없는 상황임
- KOSIS 설명자료에 공표 URL 미기재 및 온라인 간행물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IBK기업은행 홈페이지에는 결과보고서를 게시하지 않고 IBK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므로 별도 안내가 필요

□ 개선방안

- 통계작성 변동사항 및 절차별 업무매뉴얼을 문서화 해 둘 필요가 있음
- 홈페이지 게시글, 팝업창 등의 형태로 공표일정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검토하고, 개별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지침 마련이 필요
- KOSIS 설명자료에 공표 URL 기재 및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보고서 파일을 KOSIS 온라인 간행물에 연계하여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사. 사후관리

□ 검토 결과

- 통계생산 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주된 통계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통계생산 절차에 대하여 독립적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홈페이지 개편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 이용자 파악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가 필요함

3.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진단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나. 목표오차 및 표본규모 → 다. 표본추출방식 → 라. 표본배정방식 → 마. 가중치 및 추정식 → 바. 공표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모집단 분석 결과

-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모집단은 584,682개 기업으로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는 <표 2-6>과 같음

<표 2-6>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개)

업종 대분류	종사자 규모						합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C 제조업	84,337	31,866	20,960	5,625	2,001	495	145,284
F 건설업	30,494	18,417	6,775	1,476	855	284	58,301
G 도매 및 소매업	74,068	17,269	6,322	1,339	419	-	99,417
H 운수 및 창고업	7,016	4,509	3,366	1,295	843	204	17,233
I 숙박 및 음식점업	72,683	9,584	1,482	196	53	-	83,998
J 정보통신업	6,504	3,706	2,369	748	379	107	13,813
L 부동산업	4,901	1,317	624	-	-	-	6,84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271	6,073	2,780	770	323	99	27,316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647	3,311	2,815	1,253	705	326	15,057
P 교육 서비스업	16,879	5,368	1,683	157	-	-	24,08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179	14,556	4,797	1,387	433	69	65,42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848	1,311	372	126	159	-	9,816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074	4,156	1,670	197	-	-	18,097
합계	384,901	121,443	56,015	14,569	6,170	1,584	584,682

-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조사모집단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업종 중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7>, <표 2-8>과 같음

<표 2-7> 제조업의 업종 중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개)

제조업 중분류	종사자규모						합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10 식료품 제조업	5,382	1,993	1,388	405	140	32	9,340
11 음료 제조업	215	75	62	20	8	1	381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332	1,611	916	199	62	3	7,123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241	1,453	473	113	44	15	8,339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26	444	190	49	11	2	2,222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496	545	209	23	7	4	2,284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84	840	545	115	44	6	3,53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65	677	358	46	21	2	3,769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518	1,124	762	226	84	17	4,731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1	117	114	58	32	8	520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071	2,868	2,094	477	175	37	11,72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70	1,198	802	143	46	9	4,468
24 1차 금속 제조업	2,085	1,216	951	279	77	19	4,627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5,199	5,157	2,977	517	143	37	24,030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71	1,402	1,086	404	195	56	6,414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96	1,113	703	226	92	28	5,158
28 전기장비 제조업	5,304	1,961	1,388	384	139	33	9,20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006	4,700	3,195	801	245	68	20,01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22	1,397	1,549	655	234	80	6,437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32	476	389	338	169	26	2,330
32 가구 제조업	2,647	703	418	34	11	2	3,815
33 기타 제품 제조업	2,365	575	289	69	10	5	3,313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119	221	102	44	12	5	1,503
합계	84,337	31,866	20,960	5,625	2,001	495	145,284

<표 2-8> 비제조업의 업종 중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개)

비제조업 중분류	종사자규모						합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41 종합 건설업	6,996	5,261	2,358	563	250	77	15,505
42 전문직별 공사업	23,498	13,156	4,417	913	605	207	42,796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606	1,860	290	41	14	-	5,811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5,140	10,102	3,683	736	300	-	49,961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35,322	5,307	2,349	562	105	-	43,645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711	2,430	2,199	996	717	180	10,233
50 수상 운송업	173	161	126	36	17	2	515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132	1,918	1,041	263	109	22	6,485
55 숙박업	2,659	536	231	63	42	-	3,531
56 음식점 및 주점업	70,024	9,048	1,251	133	11	-	80,467
58 출판업	3,647	2,125	1,381	420	212	63	7,848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17	406	239	58	29	5	1,554
60 방송업	63	45	53	34	20	7	222
61 우편 및 통신업	131	54	27	23	13	4	252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52	812	505	148	73	16	2,906
63 정보서비스업	494	264	164	65	32	12	1,031
68 부동산업	4,901	1,317	624	-	-	-	6,842
70 연구개발업	609	308	172	51	23	9	1,172
71 전문 서비스업	9,660	2,404	970	324	156	52	13,566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64	2,699	1,396	368	133	37	9,697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38	662	242	27	11	1	2,881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528	824	719	329	185	79	3,664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3,687	2,133	1,968	906	511	247	9,452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432	354	128	18	9	-	1,941
85 교육 서비스업	16,879	5,368	1,683	157	-	-	24,087
86 보건업	20,314	5,646	2,083	1,035	405	68	29,551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23,865	8,910	2,714	352	28	1	35,870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55	194	74	20	6	-	1,349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6,793	1,117	298	106	153	-	8,467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4,869	1,853	827	52	-	-	7,601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7,205	2,303	843	145	-	-	10,496
합계	300,564	89,577	35,055	8,944	4,169	1,089	439,398

- 분석결과 584,682개 기업체 중 제조업 기업체 수는 145,284개, 비제조업 기업체 수는 439,398개로 기업체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4.8%임

□ 표본추출틀 검토 결과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표본추출단위는 기업체이나, 표본추출틀로 사업체 기준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매출액 기준(3년 평균)을 따라야 하나 현재 표본추출틀인 전국사업체조사는 3년 평균 매출액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개선 방안

- 정확한 중소기업 기준 적용을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여야 하며, 표본추출단위가 기업체이므로, 표본추출틀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모집단 구축 필요

<표 2-9> 모집단 구축방안

단계 구분	모집단 구축 절차
1단계	매칭* & 재매칭** 자료만 이용 * 매칭: 전산연계 및 수작업 연계/ ** 재매칭: 미연계 자료 중 사업자등록번호 1:1매칭
2단계	폐업한 기업체 삭제
3단계	활동* 중인 사업체만 이용 * 활동: 매출액 또는 종사자 수가 존재
4단계	조직형태 중 개인사업체, 회사법인만 포함(회사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5단계	공공기관유형코드에서 공공기관 제외
6단계	산업 대분류 중 ('C', 'F', 'G', 'H', 'I', 'J', 'L', 'M', 'N', 'P', 'Q', 'R', 'S') 에 해당하는 업종만 사용
7단계	산업 중분류 중 (10,11,13,14,15,16,17,18,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41,42,45,46,47,49,50,52,55,56,58,59,60,61,62,63,68,70,71,72,73,74,75,76,85,86,87,90,91,95,96)에 해당하는 업종만 사용
8단계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체 제외

- 변경 전후의 표본추출틀과 조사모집단 정의 및 층화기준 변경에 따른 모집단 크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0> 표본추출틀, 조사모집단 정의 및 층화 기준에 따른 모집단 크기 비교
(단위 : 개)

표본추출틀	조사모집단 정의	층화기준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전국사업체 조사	(기존)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145,284	439,398	584,682
SBR	(1안)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387,663	2,765,014	3,152,677
	(2안) 5억 이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143,811	474,965	618,776

* 중소기업실태조사 기준과 동일

- (기존) 표본추출틀은 전국사업체조사이며,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을 조사모집단으로 하여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로 층화
- (1안) 표본추출틀을 SBR자료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따라 조사모집단을 정의하고, 업종별 매출액 규모로 층화함
- (2안) 표본추출틀을 SBR자료로 변경하고, 매출액 5억원 이상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따라 조사모집단 구축 후 업종별 매출액 규모로 층화하여 모집단을 분석하고 있음

* SBR을 이용한 조사모집단 구축시 매출액 · 종사자 수 · 업체 수의 업종별 비중, 시계열 유지 및 유사 통계(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사자 수/매출액 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 (1안)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 3,152,677개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따른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조사 모집단을 설정하기 위해 매출액 층화 기준을 규모1에서 규모8로 구분해 보면 <표 2-11>과 같음

<표 2-11>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층화 기준

(단위 : 원)

업종 대분류		매출액 규모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C 제조업	14, 15, 24, 28, 32	5억 미만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500억
	17	5억 미만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500억
	10, 20, 25, 26, 29, 30	5억 미만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000억
	13, 16, 22, 31	5억 미만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000억
	11, 21, 23	5억 미만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800억
	18, 27, 33	5억 미만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800억
	34	5억 미만	5~20억 ¹⁾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600억
F 건설업		5억 미만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000억
G 도매 및 소매업		5억 미만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1,000억
H 운수 및 창고업		5억 미만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800억
I 숙박 및 음식점업		3억 미만	3~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
J 정보통신업		5억 미만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800억
L 부동산업		5억 미만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억 미만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억 미만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P 교육 서비스업		3억 미만	3~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억 미만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억 미만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 미만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1) 단, 제조업 중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의 규모1은 소기업 기준(5~10억), 중기업 기준(10~20억)으로 층화

 : 소기업,  : 중기업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따른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는 <표 2-12>와 같음

<표 2-12>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개)

업종 대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C 제조업	14,15,17,24,28,32	40,654	15,561	5,460	1,606	1,025	832	794	311	66,243
	10,13,16,20,22,25,26,29,30,31	147,646	59,242	21,259	6,735	3,917	3,182	2,862	906	245,749
	11,18,21,23,27,33,34	55,552	13,230	3,872	1,210	674	530	466	137	75,671
F 건설업		73,264	31,456	11,441	3,453	1,842	1,296	1,093	329	124,174
G 도매 및 소매업		666,730	103,238	85,421	19,892	11,571	9,903	2,484	1,084	900,323
H 운수 및 창고업		240,062	9,438	3,969	1,094	576	504	361	75	256,079
I 숙박 및 음식점업		583,916	75,436	7,526	584	223	190	72	0	667,947
J 정보통신업		24,270	3,888	4,046	1,109	701	767	263	126	35,170
L 부동산업		111,033	3,785	3,280	849	514	591	256	0	120,30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8	8,239	1,760	1,384	746	696	207	55	83,205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1,886	4,430	4,420	1,115	669	719	227	81	53,547
P 교육 서비스업		119,971	6,742	1,382	176	88	69	16	0	128,44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068	15,705	7,856	1,212	654	547	102	17	68,16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161	993	577	121	104	191	40	19	97,206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1,570	5,255	2,918	476	141	70	17	3	230,450
합계		2,533,901	356,638	165,187	41,016	23,445	20,087	9,260	3,143	3,152,677

- 조사모집단 분포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모집단을 가진 층*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표에 관련 설명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P(교육서비스),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업종에서 규모 7 또는 8

- SBR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한 조사모집단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13>, <표 2-14>와 같음

- 제조업 기업체 수는 387,663개, 비제조업 기업체 수는 2,765,014개로
기업체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3%임

<표 2-13>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개)

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10 식료품 제조업	40,656	4,488	2,076	734	437	362	297	101	49,151
11 음료 제조업	963	157	35	19	9	21	22	10	1,236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5,158	4,785	1,715	550	290	222	140	32	22,892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915	2,475	769	226	171	130	120	50	16,856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393	1,040	349	83	49	52	39	18	5,023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645	1,498	470	141	73	41	33	6	5,907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017	2,222	852	226	158	99	79	29	6,682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873	3,152	672	151	69	63	41	6	18,027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486	2,920	1,382	477	305	233	247	101	10,151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19	188	109	47	34	28	57	31	813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618	6,322	2,505	862	489	408	339	97	19,64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452	2,143	1,166	503	294	214	170	37	9,979
24 1차 금속 제조업	2,620	2,185	1,063	388	227	258	258	108	7,107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35,135	16,026	4,379	1,168	665	452	357	86	58,268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360	4,940	2,067	670	401	336	371	156	16,301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857	3,023	946	283	179	125	130	39	11,582
28 전기장비 제조업	10,839	5,367	1,831	543	342	241	246	103	19,51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743	14,200	4,624	1,420	742	645	573	142	49,08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322	3,015	1,447	478	372	377	428	169	10,608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23	1,048	594	235	143	106	77	16	3,742
32 가구 제조업	7,870	2,272	596	140	78	52	52	3	11,063
33 기타 제품 제조업	16,631	3,230	754	174	78	63	42	12	20,984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1,457	1,337	190	33	11	16	4	2	13,050
합계	243,852	88,033	30,591	9,551	5,616	4,544	4,122	1,354	387,663

<표 2-14>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개)

비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41 종합 건설업	10,758	6,500	3,473	1,430	875	601	525	178	24,340
42 전문직별 공사업	62,506	24,956	7,968	2,023	967	695	568	151	99,834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7,399	3,888	4,743	853	432	289	58	57	27,719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04,891	50,897	55,012	14,099	8,580	7,846	2,107	890	344,322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44,440	48,453	25,666	4,940	2,559	1,768	319	137	528,28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28,149	4,904	2,008	526	273	238	169	27	236,294
50 수상 운송업	382	247	109	68	41	37	38	17	939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1,531	4,287	1,852	500	262	229	154	31	18,846
55 숙박업	39,178	2,583	323	57	29	48	18	0	42,236
56 음식점 및 주점업	544,738	72,853	7,203	527	194	142	54	0	625,711
58 출판업	12,651	2,131	2,230	616	394	429	133	59	18,643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019	501	484	125	70	72	12	6	5,289
60 방송업	234	28	48	15	14	32	14	15	400
61 우편 및 통신업	879	95	107	32	15	25	12	6	1,171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159	850	868	242	152	152	58	23	6,504
63 정보서비스업	2,328	283	309	79	56	57	34	17	3,163
68 부동산업	111,033	3,785	3,280	849	514	591	256	0	120,308
70 연구개발업	2,236	270	68	64	32	39	9	3	2,721
71 전문 서비스업	34,176	3,719	912	714	397	345	102	22	40,387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273	3,113	616	483	260	235	88	28	21,096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433	1,137	164	123	57	77	8	2	19,001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681	851	858	239	143	161	45	22	8,000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28,695	2,786	2,972	790	482	503	172	54	36,454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7,510	793	590	86	44	55	10	5	9,093
85 교육 서비스업	119,971	6,742	1,382	176	88	69	16	0	128,444
86 보건업	40,841	15,582	7,778	1,200	651	545	102	16	66,715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227	123	78	12	3	2	0	1	1,446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713	212	161	42	26	24	5	2	11,185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84,448	781	416	79	78	167	35	17	86,021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53,001	3,468	1,770	282	67	23	8	3	58,622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8,569	1,787	1,148	194	74	47	9	0	171,828
합계	2,290,049	268,605	134,596	31,465	17,829	15,543	5,138	1,789	2,765,014

-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를 분석해 보면 <표 2-15>와 같음. 전체 종사자 수는 8,592,634명임

<표 2-15>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업종 대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C 제조업	14,15,17,24,28,32	38,435	89,970	82,403	39,492	31,105	37,590	55,716	37,370	412,081
	10,13,16,20,22,25,26,29,30,31	130,906	364,180	343,624	186,637	149,502	164,469	247,453	154,513	1,741,284
	11,18,21,23,27,33,34	46,869	93,227	68,785	34,471	25,550	30,353	45,885	23,999	369,139
F 건설업		110,120	270,878	245,116	135,624	110,868	123,148	211,931	123,631	1,331,316
G 도매 및 소매업		192,590	181,104	301,066	138,271	117,932	166,557	81,201	65,755	1,244,476
H 운수 및 창고업		24,448	84,430	99,262	45,546	29,541	42,807	51,290	18,986	396,310
I 숙박 및 음식점업		174,339	246,178	90,570	19,080	12,052	20,296	14,773	-	577,288
J 정보통신업		39,290	26,347	54,173	30,550	30,112	54,411	33,202	24,470	292,555
L 부동산업		38,578	18,730	31,462	15,493	13,266	25,725	16,140	-	159,39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0,095	59,724	38,457	41,870	34,161	55,795	35,432	15,228	400,762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5,595	54,822	147,345	90,170	86,053	216,500	136,942	76,091	873,518
P 교육 서비스업		37,568	22,774	16,652	4,712	3,710	4,079	4,407	-	93,90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7,505	84,763	102,911	47,064	42,853	57,950	22,797	6,527	472,37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338	5,717	7,237	3,448	3,778	10,794	6,090	2,797	63,19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5,987	33,234	43,535	17,253	6,836	4,305	2,834	1,056	165,040
합계		1,205,663	1,636,078	1,672,598	849,681	697,319	1,014,779	966,093	550,423	8,592,634

- 조사모집단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업종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를 분석해 보면 <표 2-16>, <표 2-17>과 같음
- 제조업 종사자 수는 2,522,504명이고, 비제조업 종사자 수는 6,070,130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4 %임

<표 2-16>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10 식료품 제조업	13,235	26,476	32,076	19,571	15,984	18,581	27,095	15,988	169,006
11 음료 제조업	1,020	1,392	657	518	362	891	2,115	1,375	8,330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013	27,809	23,282	13,025	10,656	10,323	10,972	4,434	114,514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645	13,148	10,274	4,491	4,167	4,894	8,330	4,279	59,228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606	5,176	4,157	1,815	1,203	2,333	2,418	2,564	22,272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542	8,903	6,552	2,908	2,091	1,607	2,007	827	28,437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628	12,461	13,244	5,789	5,146	4,864	6,448	4,415	55,995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208	18,647	11,150	4,525	3,205	4,055	5,041	1,117	58,948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186	15,739	17,802	10,436	9,845	10,763	17,217	15,524	103,512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27	1,940	2,561	1,771	1,853	2,007	8,468	7,822	27,349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535	39,234	38,998	22,239	16,608	19,158	29,192	16,358	193,32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677	14,164	15,791	10,460	8,359	7,714	10,542	3,451	75,158
24 1차 금속 제조업	3,648	13,502	16,131	9,219	6,102	9,926	14,776	10,319	83,623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34,424	97,190	69,510	32,508	22,998	23,242	29,879	13,549	323,300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752	34,498	36,086	20,733	18,409	20,276	35,834	26,237	203,825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264	20,532	16,157	9,655	7,777	8,257	15,012	8,106	95,760
28 전기장비 제조업	12,346	31,756	28,975	14,260	12,041	13,163	19,953	15,454	147,94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233	79,731	69,397	37,529	28,192	33,414	49,874	28,414	352,78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673	26,355	35,521	16,519	15,446	19,903	37,350	30,648	189,415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313	8,245	14,400	11,169	9,273	7,202	8,033	2,534	63,169
32 가구 제조업	6,562	13,927	9,622	3,918	2,446	2,410	3,791	339	43,015
33 기타 제품 제조업	14,690	27,732	17,959	5,945	3,384	4,673	4,214	1,276	79,873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83	8,820	4,510	1,597	610	2,756	493	852	23,721
합계	216,210	547,377	494,812	260,600	206,157	232,412	349,054	215,882	2,522,504

<표 2-17>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비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41 종합 건설업	23,328	63,916	76,995	50,929	42,613	42,133	63,974	35,245	399,133
42 전문직별 공사업	86,792	206,962	168,121	84,695	68,255	81,015	147,957	88,386	932,183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353	6,614	14,593	5,356	3,571	4,144	2,798	3,919	47,348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86,021	87,080	196,648	99,543	87,769	126,656	63,581	46,372	793,670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00,216	87,410	89,825	33,372	26,592	35,757	14,822	15,464	403,458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792	58,450	72,406	30,879	18,748	28,157	36,209	12,115	270,756
50 수상 운송업	584	1,841	2,013	1,555	1,237	1,900	2,153	1,515	12,798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072	24,139	24,843	13,112	9,556	12,750	12,928	5,356	112,756
55 숙박업	9,129	10,007	4,819	2,073	1,427	4,964	4,348	-	36,767
56 음식점 및 주점업	165,210	236,171	85,751	17,007	10,625	15,332	10,425	-	540,521
58 출판업	22,236	14,982	31,086	17,459	17,733	33,057	17,236	14,053	167,842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918	2,571	4,815	2,477	2,177	3,503	864	217	20,542
60 방송업	338	176	789	394	579	1,798	1,344	1,901	7,319
61 우편 및 통신업	1,113	457	1,172	721	366	1,094	934	648	6,505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418	6,030	11,770	7,176	6,353	11,055	7,085	4,560	61,447
63 정보서비스업	4,267	2,131	4,541	2,323	2,904	3,904	5,739	3,091	28,900
68 부동산업	38,578	18,730	31,462	15,493	13,266	25,725	16,140	-	159,394
70 연구개발업	4,561	1,857	1,205	1,657	1,195	3,415	1,153	449	15,492
71 전문 서비스업	66,411	23,755	19,509	20,197	15,698	22,048	14,085	3,938	185,641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6,490	28,094	15,346	17,737	15,208	25,911	19,740	10,617	169,143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633	6,018	2,397	2,279	2,060	4,421	454	224	30,48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8,307	17,583	44,243	28,859	29,164	71,534	34,182	30,864	274,736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42,485	33,950	98,226	59,937	55,683	142,211	102,367	45,099	579,958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4,803	3,289	4,876	1,374	1,206	2,755	393	128	18,824
85 교육 서비스업	37,568	22,774	16,652	4,712	3,710	4,079	4,407	-	93,902
86 보건업	100,354	81,368	98,749	45,772	42,578	57,314	22,797	6,103	455,035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7,151	3,395	4,162	1,292	275	636	-	424	17,335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75	1,099	1,710	1,178	732	1,206	718	385	11,703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8,663	4,618	5,527	2,270	3,046	9,588	5,372	2,412	51,496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4,659	19,927	24,784	10,455	3,100	1,437	1,207	1,056	86,625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328	13,307	18,751	6,798	3,736	2,868	1,627	-	78,415
합계	989,453	1,088,701	1,177,786	589,081	491,162	782,367	617,039	334,541	6,070,130

-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표 2-18>와 같으며 전체 매출액은 1,964,219,343(백만원)임

<표 2-18>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업종 대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제조업	14,15,17,24,28,32	6,465,463	15,598,728	17,164,627	10,189,766	9,963,327	12,737,951	24,493,080	21,344,146	117,957,088
	10,13,16,20,22,25,26,29,30,31	22,400,200	59,709,340	66,622,004	42,387,659	38,078,830	48,634,694	86,284,723	62,985,192	427,102,642
	11,18,21,23,27,33,34	7,454,000	12,956,999	12,122,779	7,590,466	6,518,650	8,050,195	14,297,091	8,426,887	77,417,067
F 건설업		11,810,695	31,876,840	35,716,886	21,649,422	17,911,638	19,755,668	33,055,471	22,658,165	194,434,785
G 도매 및 소매업		83,740,691	72,868,070	143,182,208	76,448,049	72,373,754	118,718,452	67,570,908	64,580,547	699,482,679
H 운수 및 창고업		9,006,667	9,935,465	12,437,302	6,849,044	5,613,333	7,776,594	10,619,373	4,788,068	67,025,846
I 숙박 및 음식점업		48,882,532	36,836,038	11,235,535	2,210,431	1,407,669	2,229,551	2,024,006	-	104,825,762
J 정보통신업		3,126,767	2,778,493	6,899,706	4,310,172	4,401,385	9,443,948	7,210,637	7,028,169	45,199,277
L 부동산업		6,590,750	2,653,609	5,593,338	3,285,881	3,258,612	7,247,133	7,122,419	-	35,751,74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445,265	5,750,623	4,308,169	5,273,133	4,660,130	8,287,974	5,688,059	2,672,924	47,086,277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313,801	3,164,756	7,609,608	4,268,844	4,163,637	9,091,343	6,401,516	4,014,330	43,027,835
P 교육 서비스업		6,791,024	3,334,193	2,169,626	675,024	560,802	808,710	473,886	-	14,813,26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256,306	10,851,128	12,361,385	4,642,059	4,107,767	6,463,588	2,780,754	774,850	53,237,83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175,971	695,737	957,889	447,816	672,448	2,399,575	1,081,991	941,289	13,372,716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082,127	3,676,241	4,611,109	1,797,288	882,045	817,041	464,277	154,397	23,484,525
합계		249,542,259	272,686,260	342,992,171	192,025,054	174,574,027	262,462,417	269,568,191	200,368,964	1,964,219,343

- 조사모집단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업종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표 2-19>, <표 2-20>과 같음
- 제조업 매출액은 622,476,797(백만원)이고, 비제조업 매출액은 1,341,742,546(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임(전체 매출액 중 규모1이 12.7% 차지)

<표 2-19>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제 조 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10 식료품 제조업	2,467,793	4,640,441	6,554,020	4,622,504	4,271,432	5,545,966	8,919,497	7,113,806	44,135,459
11 음료 제조업	94,845	160,713	111,617	121,878	92,350	320,924	702,414	622,685	2,227,426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304,544	4,754,942	5,393,760	3,484,876	2,799,898	3,359,363	4,129,613	2,204,506	28,431,502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604,479	2,400,042	2,389,880	1,418,114	1,674,966	1,962,766	3,813,393	3,458,412	18,722,052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00,280	1,050,723	1,079,498	524,124	487,141	768,182	1,165,336	1,276,692	6,851,976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533,575	1,513,669	1,453,124	859,021	716,545	623,577	976,557	395,255	7,071,32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20,027	2,279,834	2,654,994	1,440,377	1,534,740	1,532,294	2,433,068	2,073,964	14,569,29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31,227	2,939,700	2,021,925	945,609	671,021	967,132	1,209,759	375,900	11,262,273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98,890	3,070,009	4,394,121	2,998,677	2,972,762	3,555,313	7,691,511	6,973,159	32,454,442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7,428	209,236	358,927	302,180	333,251	409,540	1,923,653	1,908,168	5,492,383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12,083	6,490,585	7,922,754	5,447,661	4,787,223	6,173,468	10,391,286	6,663,708	49,688,76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97,455	2,290,213	3,803,166	3,154,774	2,842,047	3,278,085	5,094,340	2,266,543	23,426,623
24 1차 금속 제조업	557,483	2,296,906	3,442,699	2,476,777	2,235,345	3,984,810	8,203,929	7,291,408	30,489,357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6,435,923	15,761,853	13,519,110	7,303,157	6,414,293	6,903,349	10,580,229	5,908,155	72,826,069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35,386	5,062,894	6,481,840	4,239,183	3,908,924	5,167,096	11,542,196	10,762,414	48,699,933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46,028	3,043,232	2,966,005	1,788,137	1,719,554	1,907,533	4,040,104	2,408,909	19,119,502
28 전기장비 제조업	2,023,595	5,361,914	5,743,272	3,447,747	3,284,190	3,709,545	7,395,285	7,073,588	38,039,13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270,963	14,216,006	14,234,250	8,952,353	7,197,994	9,915,031	16,620,440	9,960,733	86,367,77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90,479	3,093,115	4,736,894	2,986,916	3,645,993	5,817,042	13,115,433	11,887,714	46,173,58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0,564	1,105,826	1,932,131	1,493,311	1,363,766	1,574,489	2,317,961	1,115,742	11,253,790
32 가구 제조업	1,159,599	2,209,309	1,854,284	882,627	746,945	780,354	1,482,069	170,082	9,285,269
33 기타 제품 제조업	2,117,023	3,081,329	2,315,181	1,082,273	754,070	919,787	1,222,565	707,421	12,199,649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119,994	1,232,576	545,958	195,615	106,357	247,194	104,256	137,261	3,689,211
합계	36,319,663	88,265,067	95,909,410	60,167,891	54,560,807	69,422,840	125,074,894	92,756,225	622,476,797

<표 2-20>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비제조업 중분류	종사자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규모8	
41 종합 건설업	1,943,664	6,869,692	11,128,367	9,039,894	8,499,541	9,196,316	15,795,235	12,389,787	74,862,496
42 전문직별 공사업	9,867,031	25,007,148	24,588,519	12,609,528	9,412,097	10,559,352	17,260,236	10,268,378	119,572,289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536,651	2,823,998	7,863,820	3,216,958	2,691,639	3,449,400	1,625,362	3,584,530	27,792,358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3,739,237	36,501,178	93,446,332	54,304,717	53,801,502	94,589,124	57,309,638	52,853,017	476,544,745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464,803	33,542,894	41,872,056	18,926,374	15,880,613	20,679,928	8,635,908	8,143,000	195,145,576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561,384	5,188,332	6,311,508	3,277,325	2,650,603	3,683,842	4,918,556	1,691,274	35,282,824
50 수상 운송업	66,172	266,041	355,587	423,357	392,595	564,768	1,131,060	1,177,425	4,377,005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379,111	4,481,092	5,770,207	3,148,362	2,570,135	3,527,984	4,569,757	1,919,369	27,366,017
55 숙박업	2,018,284	1,263,830	515,376	217,300	186,423	573,668	499,190	-	5,274,071
56 음식점 및 주점업	46,864,248	35,572,208	10,720,159	1,993,131	1,221,246	1,655,883	1,524,816	-	99,551,691
58 출판업	1,656,950	1,528,484	3,797,415	2,397,387	2,473,854	5,167,099	3,568,236	3,240,540	23,829,965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86,155	355,332	817,736	486,790	432,778	893,441	332,097	370,467	4,174,796
60 방송업	27,217	18,962	88,377	54,986	89,733	444,702	377,127	791,563	1,892,667
61 우편 및 통신업	87,625	68,182	189,783	123,304	93,696	341,275	326,409	357,511	1,587,785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91,454	602,585	1,471,835	939,981	962,727	1,854,857	1,646,901	1,317,280	9,387,620
63 정보서비스업	277,366	204,948	534,560	307,724	348,597	742,574	959,867	950,808	4,326,444
68 부동산업	6,590,750	2,653,609	5,593,338	3,285,881	3,258,612	7,247,133	7,122,419	-	35,751,742
70 연구개발업	268,361	189,521	164,883	246,378	196,292	457,156	238,249	164,083	1,924,923
71 전문 서비스업	5,474,345	2,572,290	2,246,223	2,727,755	2,489,011	4,089,753	2,817,041	1,031,537	23,447,955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895,694	2,202,770	1,499,159	1,837,710	1,617,702	2,847,876	2,426,412	1,380,053	16,707,376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06,865	786,042	397,904	461,290	357,125	893,189	206,357	97,251	5,006,023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24,901	601,652	1,473,690	914,246	896,541	2,065,060	1,261,830	1,069,738	9,007,658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2,808,206	1,987,045	5,166,051	3,023,431	2,993,669	6,371,075	4,881,363	2,700,643	29,931,483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780,694	576,059	969,867	331,167	273,427	655,208	258,323	243,949	4,088,694
85 교육 서비스업	6,791,024	3,334,193	2,169,626	675,024	560,802	808,710	473,886	-	14,813,265
86 보건업	11,093,861	10,767,012	12,236,648	4,593,254	4,089,706	6,444,123	2,780,754	732,307	52,737,665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62,445	84,116	124,737	48,805	18,061	19,465	-	42,543	500,172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06,964	150,262	278,272	157,932	157,190	317,770	135,272	89,670	1,993,332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469,007	545,475	679,617	289,884	515,258	2,081,805	946,719	851,619	11,379,384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4,704,257	2,431,143	2,792,120	1,062,148	412,120	273,793	204,912	154,397	12,034,890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77,870	1,245,098	1,818,989	735,140	469,925	543,248	259,365	-	11,449,635
합계	213,222,596	184,421,193	247,082,761	131,857,163	120,013,220	193,039,577	144,493,297	107,612,739	1,341,742,546

2) (2안) 매출액 5억원 이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 618,776개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3억원 이상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5억원 이상)에 따른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조사모집단을 설정하기 위해 매출액 총화 기준을 규모1에서 규모7로 구분해 보면 <표 2-21>과 같음

<표 2-21>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총화 기준

(단위 : 원)

업종 대분류		매출액 규모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C 제조업	14, 15, 24, 28, 32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500억
	17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500억
	10, 20, 25, 26, 29, 30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000억
	13, 16, 22, 31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000억
	11, 21, 23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800억
	18, 27, 33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800억
	34	5~20억 ¹⁾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600억
F 건설업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000억
G 도매 및 소매업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1,000억
H 운수 및 창고업		5~20억	20~50억	5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800억
I 숙박 및 음식점업		3~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
J 정보통신업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800억
L 부동산업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P 교육 서비스업		3~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0억	10~30억	30~50억	50~80억	80~200억	200~400억	400~600억

1) 단, 제조업 중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의 규모1은 소기업 기준(5~10억), 중기업 기준(10~20억)으로 총화

: 소기업, : 중기업

- 매출액 5억원 이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따른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조사모집단 분포는 <표 2-22>와 같음

<표 2-22>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개)

업종 대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C 제조업	14,15,17,24,28,32	15,561	5,460	1,606	1,025	832	794	311	25,589
	10,13,16,20,22,25,26,29,30,31	59,242	21,259	6,735	3,917	3,182	2,862	906	98,103
	11,18,21,23,27,33,34	13,230	3,872	1,210	674	530	466	137	20,119
F 건설업		31,456	11,441	3,453	1,842	1,296	1,093	329	50,910
G 도매 및 소매업		103,238	85,421	19,892	11,571	9,903	2,484	1,084	233,593
H 운수 및 창고업		9,438	3,969	1,094	576	504	361	75	16,017
I 숙박 및 음식점업		75,436	7,526	584	223	190	72	-	84,031
J 정보통신업		3,888	4,046	1,109	701	767	263	126	10,900
L 부동산업		3,785	3,280	849	514	591	256	-	9,27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239	1,760	1,384	746	696	207	55	13,087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430	4,420	1,115	669	719	227	81	11,661
P 교육 서비스업		6,742	1,382	176	88	69	16	-	8,47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705	7,856	1,212	654	547	102	17	26,093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93	577	121	104	191	40	19	2,04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55	2,918	476	141	70	17	3	8,880
합계		356,638	165,187	41,016	23,445	20,087	9,260	3,143	618,776

- SBR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한 조사모집단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23>, <표 2-24>와 같음
- 제조업 기업체 수는 143,811개, 비제조업 기업체 수는 474,965개이며 기업체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3.2%임
- 기존모집단에서는 제조업 기업체 수가 145,284개이고, 비제조업 기업체 수가 439,398개로 나타났음. 기업체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4.8%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2-23>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개)

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10 식료품 제조업	4,488	2,076	734	437	362	297	101	8,495
11 음료 제조업	157	35	19	9	21	22	10	273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785	1,715	550	290	222	140	32	7,734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475	769	226	171	130	120	50	3,941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40	349	83	49	52	39	18	1,63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1,498	470	141	73	41	33	6	2,262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22	852	226	158	99	79	29	3,665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152	672	151	69	63	41	6	4,154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920	1,382	477	305	233	247	101	5,665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88	109	47	34	28	57	31	494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322	2,505	862	489	408	339	97	11,02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143	1,166	503	294	214	170	37	4,527
24 1차 금속 제조업	2,185	1,063	388	227	258	258	108	4,487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6,026	4,379	1,168	665	452	357	86	23,133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940	2,067	670	401	336	371	156	8,941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23	946	283	179	125	130	39	4,725
28 전기장비 제조업	5,367	1,831	543	342	241	246	103	8,67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200	4,624	1,420	742	645	573	142	22,34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5	1,447	478	372	377	428	169	6,28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48	594	235	143	106	77	16	2,219
32 가구 제조업	2,272	596	140	78	52	52	3	3,193
33 기타 제품 제조업	3,230	754	174	78	63	42	12	4,353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37	190	33	11	16	4	2	1,593
합계	88,033	30,591	9,551	5,616	4,544	4,122	1,354	143,811

<표 2-24>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 개)

비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41 종합 건설업	6,500	3,473	1,430	875	601	525	178	13,582
42 전문직별 공사업	24,956	7,968	2,023	967	695	568	151	37,328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888	4,743	853	432	289	58	57	10,320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0,897	55,012	14,099	8,580	7,846	2,107	890	139,431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8,453	25,666	4,940	2,559	1,768	319	137	83,84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04	2,008	526	273	238	169	27	8,145
50 수상 운송업	247	109	68	41	37	38	17	557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287	1,852	500	262	229	154	31	7,315
55 숙박업	2,583	323	57	29	48	18	-	3,058
56 음식점 및 주점업	72,853	7,203	527	194	142	54	-	80,973
58 출판업	2,131	2,230	616	394	429	133	59	5,992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01	484	125	70	72	12	6	1,270
60 방송업	28	48	15	14	32	14	15	166
61 우편 및 통신업	95	107	32	15	25	12	6	292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50	868	242	152	152	58	23	2,345
63 정보서비스업	283	309	79	56	57	34	17	835
68 부동산업	3,785	3,280	849	514	591	256	-	9,275
70 연구개발업	270	68	64	32	39	9	3	485
71 전문 서비스업	3,719	912	714	397	345	102	22	6,211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113	616	483	260	235	88	28	4,823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37	164	123	57	77	8	2	1,568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851	858	239	143	161	45	22	2,319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2,786	2,972	790	482	503	172	54	7,759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793	590	86	44	55	10	5	1,583
85 교육 서비스업	6,742	1,382	176	88	69	16	-	8,473
86 보건업	15,582	7,778	1,200	651	545	102	16	25,874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23	78	12	3	2	-	1	219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2	161	42	26	24	5	2	472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781	416	79	78	167	35	17	1,573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468	1,770	282	67	23	8	3	5,621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87	1,148	194	74	47	9	-	3,259
합계	268,605	134,596	31,465	17,829	15,543	5,138	1,789	474,965

-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를 분석해 보면 <표 2-25>와 같음. 전체 종사자 수는 7,386,971명임

<표 2-25>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종사자 수

(단위 : 명)

업종 대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C 제조업	14,15,17,24,28,32	89,970	82,403	39,492	31,105	37,590	55,716	37,370	373,646
	10,13,16,20,22,25,26,29,30,31	364,180	343,624	186,637	149,502	164,469	247,453	154,513	1,610,378
	11,18,21,23,27,33,34	93,227	68,785	34,471	25,550	30,353	45,885	23,999	322,270
F 건설업		270,878	245,116	135,624	110,868	123,148	211,931	123,631	1,221,196
G 도매 및 소매업		181,104	301,066	138,271	117,932	166,557	81,201	65,755	1,051,886
H 운수 및 창고업		84,430	99,262	45,546	29,541	42,807	51,290	18,986	371,862
I 숙박 및 음식점업		246,178	90,570	19,080	12,052	20,296	14,773	-	402,949
J 정보통신업		26,347	54,173	30,550	30,112	54,411	33,202	24,470	253,265
L 부동산업		18,730	31,462	15,493	13,266	25,725	16,140	-	120,81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724	38,457	41,870	34,161	55,795	35,432	15,228	280,667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4,822	147,345	90,170	86,053	216,500	136,942	76,091	807,923
P 교육 서비스업		22,774	16,652	4,712	3,710	4,079	4,407	-	56,33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4,763	102,911	47,064	42,853	57,950	22,797	6,527	364,86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17	7,237	3,448	3,778	10,794	6,090	2,797	39,86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234	43,535	17,253	6,836	4,305	2,834	1,056	109,053
합계		1,636,078	1,672,598	849,681	697,319	1,014,779	966,093	550,423	7,386,971

- 조사모집단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업종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수를 분석해 보면 <표 2-26>, <표 2-27>과 같음
- 제조업 종사자 수는 2,306,294명이고, 비제조업 종사자 수는 5,080,677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1.2 %임

<표 2-26>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종사자 수
(단위 : 명)

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10 식료품 제조업	26,476	32,076	19,571	15,984	18,581	27,095	15,988	155,771
11 음료 제조업	1,392	657	518	362	891	2,115	1,375	7,310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7,809	23,282	13,025	10,656	10,323	10,972	4,434	100,501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148	10,274	4,491	4,167	4,894	8,330	4,279	49,583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176	4,157	1,815	1,203	2,333	2,418	2,564	19,666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8,903	6,552	2,908	2,091	1,607	2,007	827	24,895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461	13,244	5,789	5,146	4,864	6,448	4,415	52,367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647	11,150	4,525	3,205	4,055	5,041	1,117	47,740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5,739	17,802	10,436	9,845	10,763	17,217	15,524	97,326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40	2,561	1,771	1,853	2,007	8,468	7,822	26,422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9,234	38,998	22,239	16,608	19,158	29,192	16,358	181,78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4,164	15,791	10,460	8,359	7,714	10,542	3,451	70,481
24 1차 금속 제조업	13,502	16,131	9,219	6,102	9,926	14,776	10,319	79,975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97,190	69,510	32,508	22,998	23,242	29,879	13,549	288,876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4,498	36,086	20,733	18,409	20,276	35,834	26,237	192,073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0,532	16,157	9,655	7,777	8,257	15,012	8,106	85,496
28 전기장비 제조업	31,756	28,975	14,260	12,041	13,163	19,953	15,454	135,60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731	69,397	37,529	28,192	33,414	49,874	28,414	326,55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355	35,521	16,519	15,446	19,903	37,350	30,648	181,74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245	14,400	11,169	9,273	7,202	8,033	2,534	60,856
32 가구 제조업	13,927	9,622	3,918	2,446	2,410	3,791	339	36,453
33 기타 제품 제조업	27,732	17,959	5,945	3,384	4,673	4,214	1,276	65,183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820	4,510	1,597	610	2,756	493	852	19,638
합계	547,377	494,812	260,600	206,157	232,412	349,054	215,882	2,306,294

<표 2-27>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종사자 수
(단위 : 명)

비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41 종합 건설업	63,916	76,995	50,929	42,613	42,133	63,974	35,245	375,805
42 전문직별 공사업	206,962	168,121	84,695	68,255	81,015	147,957	88,386	845,391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614	14,593	5,356	3,571	4,144	2,798	3,919	40,995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87,080	196,648	99,543	87,769	126,656	63,581	46,372	707,649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87,410	89,825	33,372	26,592	35,757	14,822	15,464	303,24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 라인 운송업	58,450	72,406	30,879	18,748	28,157	36,209	12,115	256,964
50 수상 운송업	1,841	2,013	1,555	1,237	1,900	2,153	1,515	12,214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4,139	24,843	13,112	9,556	12,750	12,928	5,356	102,684
55 숙박업	10,007	4,819	2,073	1,427	4,964	4,348	-	27,638
56 음식점 및 주점업	236,171	85,751	17,007	10,625	15,332	10,425	-	375,311
58 출판업	14,982	31,086	17,459	17,733	33,057	17,236	14,053	145,606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571	4,815	2,477	2,177	3,503	864	217	16,624
60 방송업	176	789	394	579	1,798	1,344	1,901	6,981
61 우편 및 통신업	457	1,172	721	366	1,094	934	648	5,392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030	11,770	7,176	6,353	11,055	7,085	4,560	54,029
63 정보서비스업	2,131	4,541	2,323	2,904	3,904	5,739	3,091	24,633
68 부동산업	18,730	31,462	15,493	13,266	25,725	16,140	-	120,816
70 연구개발업	1,857	1,205	1,657	1,195	3,415	1,153	449	10,931
71 전문 서비스업	23,755	19,509	20,197	15,698	22,048	14,085	3,938	119,230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8,094	15,346	17,737	15,208	25,911	19,740	10,617	132,653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18	2,397	2,279	2,060	4,421	454	224	17,853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7,583	44,243	28,859	29,164	71,534	34,182	30,864	256,429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33,950	98,226	59,937	55,683	142,211	102,367	45,099	537,473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3,289	4,876	1,374	1,206	2,755	393	128	14,021
85 교육 서비스업	22,774	16,652	4,712	3,710	4,079	4,407	-	56,334
86 보건업	81,368	98,749	45,772	42,578	57,314	22,797	6,103	354,681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3,395	4,162	1,292	275	636	-	424	10,184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99	1,710	1,178	732	1,206	718	385	7,028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618	5,527	2,270	3,046	9,588	5,372	2,412	32,833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9,927	24,784	10,455	3,100	1,437	1,207	1,056	61,966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307	18,751	6,798	3,736	2,868	1,627	-	47,087
합계	1,088,701	1,177,786	589,081	491,162	782,367	617,039	334,541	5,080,677

-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표 2-28>과 같음. 전체 매출액은 17,146,770(억원)임

<표 2-28> 업종 대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매출액

(단위 : 억원)

업종 대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C 제조업	14,15,17,24,28,32	155,986	171,647	101,897	99,632	127,380	244,931	213,442	1,114,917
	10,13,16,20,22,25,26,29,30,31	597,093	666,220	423,878	380,788	486,347	862,847	629,852	4,047,024
	11,18,21,23,27,33,34	129,569	121,228	75,905	65,188	80,501	142,972	84,269	699,631
F 건설업		318,768	357,169	216,494	179,116	197,557	330,555	226,582	1,826,241
G 도매 및 소매업		728,681	1,431,822	764,480	723,738	1,187,185	675,709	645,805	6,157,420
H 운수 및 창고업		99,355	124,373	68,490	56,133	77,766	106,194	47,881	580,192
I 숙박 및 음식점업		368,360	112,355	22,104	14,077	22,296	20,240	-	559,432
J 정보통신업		27,785	68,997	43,102	44,014	94,439	72,106	70,282	420,725
L 부동산업		26,536	55,933	32,859	32,586	72,471	71,224	-	291,61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7,506	43,082	52,731	46,601	82,880	56,881	26,729	366,41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1,648	76,096	42,688	41,636	90,913	64,015	40,143	387,140
P 교육 서비스업		33,342	21,696	6,750	5,608	8,087	4,739	-	80,22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8,511	123,614	46,421	41,078	64,636	27,808	7,749	419,81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957	9,579	4,478	6,724	23,996	10,820	9,413	71,96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762	46,111	17,973	8,820	8,170	4,643	1,544	124,024
합계		2,726,863	3,429,922	1,920,251	1,745,740	2,624,624	2,695,682	2,003,690	17,146,770

- 조사모집단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업종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표 2-29>, <표 2-30>과 같음
 - 제조업 매출액은 5,861,571(억원)이고, 비제조업 매출액은 11,285,199 (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임

<표 2-29> 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매출액

(단위 : 억원)

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10 식료품 제조업	46,404	65,540	46,225	42,714	55,460	89,195	71,138	416,677
11 음료 제조업	1,607	1,116	1,219	924	3,209	7,024	6,227	21,326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7,549	53,938	34,849	27,999	33,594	41,296	22,045	261,270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4,000	23,899	14,181	16,750	19,628	38,134	34,584	171,176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507	10,795	5,241	4,871	7,682	11,653	12,767	63,517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15,137	14,531	8,590	7,165	6,236	9,766	3,953	65,377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798	26,550	14,404	15,347	15,323	24,331	20,740	139,493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9,397	20,219	9,456	6,710	9,671	12,098	3,759	91,310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0,700	43,941	29,987	29,728	35,553	76,915	69,732	316,556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092	3,589	3,022	3,333	4,095	19,237	19,082	54,450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4,906	79,228	54,477	47,872	61,735	103,913	66,637	478,76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902	38,032	31,548	28,420	32,781	50,943	22,665	227,292
24 1차 금속 제조업	22,969	34,427	24,768	22,353	39,848	82,039	72,914	299,319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57,619	135,191	73,032	64,143	69,033	105,802	59,082	663,901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0,629	64,818	42,392	39,089	51,671	115,422	107,624	471,645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432	29,660	17,881	17,196	19,075	40,401	24,089	178,735
28 전기장비 제조업	53,619	57,433	34,477	32,842	37,095	73,953	70,736	360,15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2,160	142,343	89,524	71,980	99,150	166,204	99,607	810,96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931	47,369	29,869	36,460	58,170	131,154	118,877	452,831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058	19,321	14,933	13,638	15,745	23,180	11,157	109,032
32 가구 제조업	22,093	18,543	8,826	7,469	7,804	14,821	1,701	81,257
33 기타 제품 제조업	30,813	23,152	10,823	7,541	9,198	12,226	7,074	100,826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2,326	5,460	1,956	1,064	2,472	1,043	1,373	25,692
합계	882,651	959,094	601,679	545,608	694,228	1,250,749	927,562	5,861,571

<표 2-30> 비제조업의 중분류별 매출액 규모별(매출액 5억원 이상) 매출액
(단위 : 억원)

비제조업 중분류	종사자규모							합계
	규모1	규모2	규모3	규모4	규모5	규모6	규모7	
41 종합 건설업	68,697	111,284	90,399	84,995	91,963	157,952	123,898	729,188
42 전문직별 공사업	250,071	245,885	126,095	94,121	105,594	172,602	102,684	1,097,053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8,240	78,638	32,170	26,916	34,494	16,254	35,845	252,557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65,012	934,463	543,047	538,015	945,891	573,096	528,530	4,428,055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335,429	418,721	189,264	158,806	206,799	86,359	81,430	1,476,808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1,883	63,115	32,773	26,506	36,838	49,186	16,913	277,214
50 수상 운송업	2,660	3,556	4,234	3,926	5,648	11,311	11,774	43,108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4,811	57,702	31,484	25,701	35,280	45,698	19,194	259,869
55 숙박업	12,638	5,154	2,173	1,864	5,737	4,992	-	32,558
56 음식점 및 주점업	355,722	107,202	19,931	12,212	16,559	15,248	-	526,874
58 출판업	15,285	37,974	23,974	24,739	51,671	35,682	32,405	221,730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553	8,177	4,868	4,328	8,934	3,321	3,705	36,886
60 방송업	190	884	550	897	4,447	3,771	7,916	18,654
61 우편 및 통신업	682	1,898	1,233	937	3,413	3,264	3,575	15,002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026	14,718	9,400	9,627	18,549	16,469	13,173	87,962
63 정보서비스업	2,049	5,346	3,077	3,486	7,426	9,599	9,508	40,491
68 부동산업	26,536	55,933	32,859	32,586	72,471	71,224	-	291,610
70 연구개발업	1,895	1,649	2,464	1,963	4,572	2,382	1,641	16,566
71 전문 서비스업	25,723	22,462	27,278	24,890	40,898	28,170	10,315	179,736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2,028	14,992	18,377	16,177	28,479	24,264	13,801	138,117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60	3,979	4,613	3,571	8,932	2,064	973	31,992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6,017	14,737	9,142	8,965	20,651	12,618	10,697	82,828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19,870	51,661	30,234	29,937	63,711	48,814	27,006	271,233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5,761	9,699	3,312	2,734	6,552	2,583	2,439	33,080
85 교육 서비스업	33,342	21,696	6,750	5,608	8,087	4,739	-	80,222
86 보건업	107,670	122,366	45,933	40,897	64,441	27,808	7,323	416,438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41	1,247	488	181	195	-	425	3,377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03	2,783	1,579	1,572	3,178	1,353	897	12,864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455	6,796	2,899	5,153	20,818	9,467	8,516	59,104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4,311	27,921	10,621	4,121	2,738	2,049	1,544	73,306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451	18,190	7,351	4,699	5,432	2,594	-	50,718
합계	1,844,212	2,470,828	1,318,572	1,200,132	1,930,396	1,444,933	1,076,127	11,285,199

나. 목표오차 및 표본규모

□ 표본규모 검토 결과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내역서에서 표본규모 산정 및 배분에 사용한 특성변수를 확인할 수 없으며, 표본규모 산출식 또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는 총 324개 층(업종 중분류별 54개 층* 종사자 규모별 6개 층)으로 표본배분되어 현재의 표본규모(4,500개)로는 층별 통계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선 방안

- 이전조사의 결과분석(공표단위별 상대표준오차(RSE) 등)을 참고하여 표본규모 및 층별 표본 수를 결정하고 개선된 표본설계에 맞는 표본크기 산출식 제공 필요

$$n = \frac{\left(\sum_{h=1}^L w_h s_h \right)^2}{\sum_{h=1}^L w_h s_h^2 / N + \left(\alpha \sum_{h=1}^L w_h \bar{y}_h \right)^2}$$

- L : 층의 수(산업×매출액 규모)
- w_h : h 층의 가중치
- s_h^2 : h 층의 표본분산
- N : 총 기업체 수
- $\bar{y}_h$: h 층의 주요변수(외부자금(은행)조달액 등) 평균
- $\bar{y}$: 주요변수의 층화 평균
- $\alpha = \frac{\sqrt{\text{var}(\bar{y})}}{\bar{y}}$: 목표 상대표준오차

- 층별 통계 생산·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 크기의 확대가 필요하며, 표본크기의 변화에 따른 상대표준오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대표준오차는 2019년에 조사된 외부자금(은행)조달액(합계) 변수를 이용하였음

<표 2-31> 표본크기의 변화에 따른 상대표준오차

(단위 : %)

표본크기	상대표준오차
4,500	9.8
5,000	8.8
5,500	7.9
6,000	7.1
6,500	6.3
7,000	5.5
7,500	4.8
8,000	4.0
8,500	3.1
9,000	2.1

다. 표본추출방식

□ 층화기준 검토 결과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는 전체 4,500개 표본을 제조업에 2,000개, 비제조업에 2,500개를 할당한 다음, 각각의 업종(중분류)별, 종사자 규모별로 1·2차 층화함
- 1차 층화(54) : 제조업 중분류 23개, 비제조업 중분류 31개
- 2차 층화(6) :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 총화 전 4,500개 표본 중 2,000개의 표본(44.4%)을 제조업에 할당하고 있으나, 기업체 수·종사자 수·매출액의 제조업 비중을 보았을 때 표본이 제조업으로 과도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임

<표 2-32> 주요 항목별 제조업 비중

(단위 : %)

구분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기존	24.8	-	-
1안	12.3	29.4	31.7
2안	23.2	31.2	34.2

-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되어 있으나 총화기준에 변경된 분류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개선 방안

- 기존 조사에서와 같이 제조업에 많은 표본을 할당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총화기준의 유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 분류 기준 또한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총화기준을 업종과 매출액 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액이 상이함으로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매출액 범주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설정

라. 표본배정방식

□ 표본배분 검토 결과

- 업종과 종사자 수 기준으로 네이만배분과 멱등배분을 시행하여 적정 표본의 크기 내에서 상대표준오차가 가장 적은 멱등배분 ($p=0.4$)을 최종 배분으로 결정하고 멱등배분 식 제시

□ 개선 방안

- 업종과 매출액 규모로 변경된 층화기준에 따라 역등배분 등 다양한 표본배분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표본배분 방안을 찾고 네이만배분 식 등 검토한 표본 배분식도 함께 제공

- 네이만배분

$$n_h = n \times \frac{N_h S_h}{\sum_h N_h S_h} ,$$

- n : 총 표본의 크기
 - n_h : 업종별 규모별 층에 할당된 표본의 크기
 - N_h : 업종별 규모별 층에 할당된 모집단의 크기
 - S_h : 업종별 규모별 층의 관심변수의 모표준편차
- 여기서 모표준편차(S_h)를 모르면 추정치 s_h 을 이용함

마. 가중치 및 추정식

□ 검토 결과

-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해서는 표본설계에 따른 설계가중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 조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가중치 및 층별 모집단 규모에 따른 사후조정 가중치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나,
- 설계가중치($\frac{N_{hi}}{n_{hi}}$)와 무응답 조정가중치($\frac{n_{hi}}{r_{hi}}$)만 곱하여 최종가중치 계산

$$w_{hi} = \frac{N_{hi}}{n_{hi}} \cdot \frac{n_{hi}}{r_{hi}} ,$$

- N_{hi} : 중분류 h 의 종사자 규모층 i 에 속하는 모집단의 크기
- n_{hi} : " " "에 할당된 표본의 크기
- r_{hi} : " " "에서 조사된 표본의 크기

○ 모수 추정식에서 최중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중분류별 평균 추정치 : $\bar{y}_h = \sum_{i=1}^I w_{hi} \bar{y}_{hi}$

• 여기서 $\bar{y}_{hi} = \frac{1}{n_{hi}} \sum_{j=1}^{n_{hi}} y_{hij}$

h : 중분류

$\bar{y}_{hi}$: 중분류 h 의 i 번 종사자 규모층의 표본평균

n_{hi} : 중분류 h 의 종사자 규모층 i 의 표본의 크기

i : 종사자규모 층

y_{hij} : 중분류별 종사자 규모층에 속한 기업체 j 의 특성 값

$$w_{hi} = \frac{N_{hi}}{n_{hi}}$$

- 중분류별 표본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 : $\hat{Var}(\bar{y}_h) = \sum_{i=1}^I w_{hi}^2 \hat{Var}(\bar{y}_{hi})$

• 여기서 $\hat{Var}(\bar{y}_{hi}) = \frac{1}{n_{hi} - 1} \sum_{j=1}^{n_{hi}} (y_{hij} - \bar{y}_{hi})^2$

- 중분류별 총계 추정치 : $\hat{\tau}_h = N_h * \bar{y}_h$

- 중분류별 총계의 분산 추정치 : $\hat{Var}(\hat{\tau}_h) = N_h^2 * \hat{Var}(\bar{y}_h)$

- 중분류별 표본평균의 허용오차 : $\pm 1.96 * \sqrt{\hat{Var}(\bar{y}_h)}$

- 표본평균의 상대표준오차 : $\frac{\sqrt{\hat{Var}(\bar{y}_h)}}{\bar{y}_h} * 100(\%)$

□ 개선 방안

○ 모수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 무응답 조정 및 사후조정 가중치를 모두 고려한 최종 가중치 설정하고 가중치 부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최중가중치 $w_{hi} = \frac{N_{hi}}{n_{hi}} \cdot \frac{n_{hi}}{r_{hi}}$ 와 모수 추정에서의 설계가중치 $w_{hi} = \frac{N_{hi}}{n_{hi}}$ 가

w_{hi} 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 가중치 w_{hi} 가 포함된 모수 추정식으로 수정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추정량 $\bar{y}$

$$\bar{y} = \frac{\sum_{h=1}^L \sum_{i=1}^{n_h} w_{hi} y_{hi}}{\sum_{h=1}^L \sum_{i=1}^{n_h} w_{hi}}$$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추정량 $\bar{y}$ 의 분산추정량

$$\hat{V}(\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 여기서 $e_{hi} = w_{hi}(y_{hi} - \bar{y})/w_{..}$,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w_{..} = \sum_{h=1}^L \sum_{i=1}^{n_h} w_{hi}$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추정량 $\bar{y}$ 의 상대 표준오차

$$\widehat{RSE}(\bar{y}) = \frac{\sqrt{\hat{V}(\bar{y})}}{\bar{y}} \times 100(\%)$$

- 각 층별 추정뿐만 아니라 공표통계 추정에 필요한 전체 평균 및 비율 추정식과 분산식 등 제시 필요

바. 공표

□ 상대표준오차 및 공표범위 검토 결과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외부차입금 보유여부와 신규대출 신청 여부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제공하고 있으나, 계획 중인 외부자금 조달액과 같은 양적인 주요 변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추가적으로 업종 대분류별 계획 중인 외부자금 조달액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보면, 9.2%에서 68.1%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2-33> 업종 대분류별 계획 중인 외부자금(은행) 조달액(합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개, 백만원, %)

업종대분류	사례수	평균 조달액	상대표준오차
C 제조업	443	1,335	9.2
F 건설업	31	4,290	63.0
G 도매 및 소매업	48	1,292	24.7
H 운수 및 창고업	61	1,369	50.0
I 숙박 및 음식점업	31	389	16.8
J 정보통신업	29	1,085	36.7
L 부동산업	8	838	46.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3,527	31.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	750	44.2
P 교육 서비스업	21	366	38.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726	45.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397	68.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	644	35.8
전체	784	1,358	10.8

□ 개선 방안

- 이용자가 통계의 신뢰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변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제공
 - 정확성 평가 기준에 맞는 유의사항을 표기하여 자료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도가 낮은 통계결과를 이용하는데 주의하도록 안내
- 신뢰성 있는 결과 제공을 위해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하여
공표범위 설정
 - 통계표 셀 내의 유효표본수가 너무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 등 통계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층을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공표 여부 재검토 필요

<표 2-34> 통계청 오차수준 권고안

구분	$RSE < 30\%$		$30\% \leq RSE < 60\%$	$60\% \leq RSE$
	$n \geq 10$	$n < 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 RSE(Relative 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 : 표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로 발표된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지표로 사용

4. 조사결과 정확성 점검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조사결과 정확성 검증을 통한 통계의 신뢰성 검토
 가. 마이크로데이터 점검 → 나. 응답률 분석 → 다. 표본관리 → 라. 이상치 분석 → 마. 관련통계와 비교 → 바. 수준분석

가. 마이크로데이터 점검 결과

□ 마이크로데이터와 공표된 자료 일치율은 84.6%임

-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로 승인 결과표와의 일치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전체 104개 통계표 중 항목없음이 5개, 수치불일치가 11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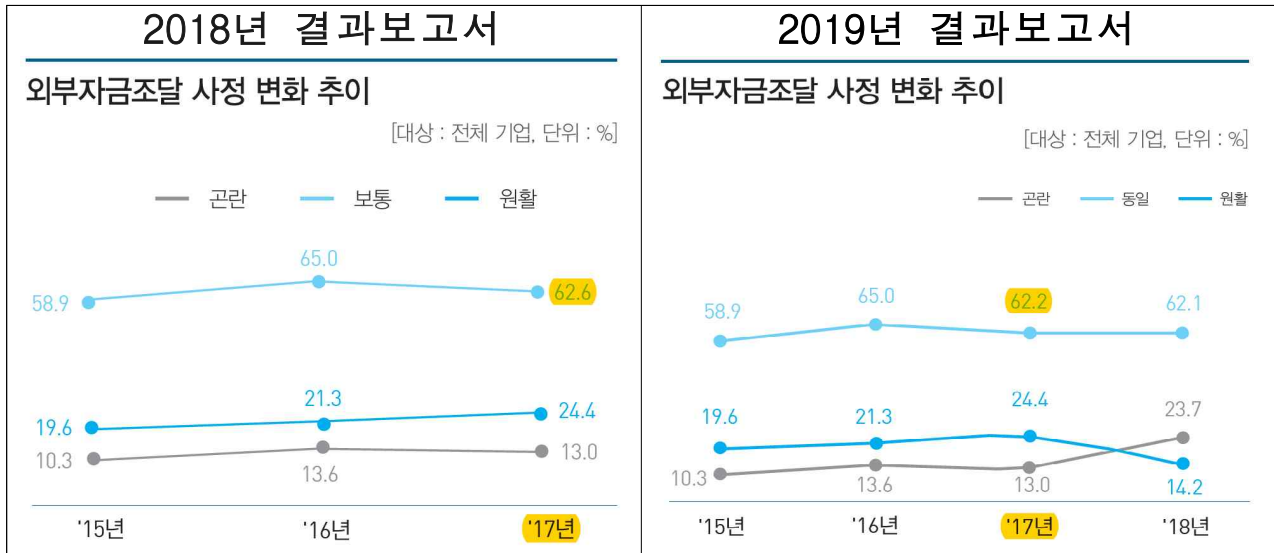
<표 2-35> 마이크로데이터와의 일치율

(단위 : 개)

일치율 (B/A)	소계(A)	통계표 수		점검항목	
		일 치(B)	불일치		
84.6%	104개	88개	16개	1. 항목없음	5개
				2. 수치불일치	11개
				3. 계산식모름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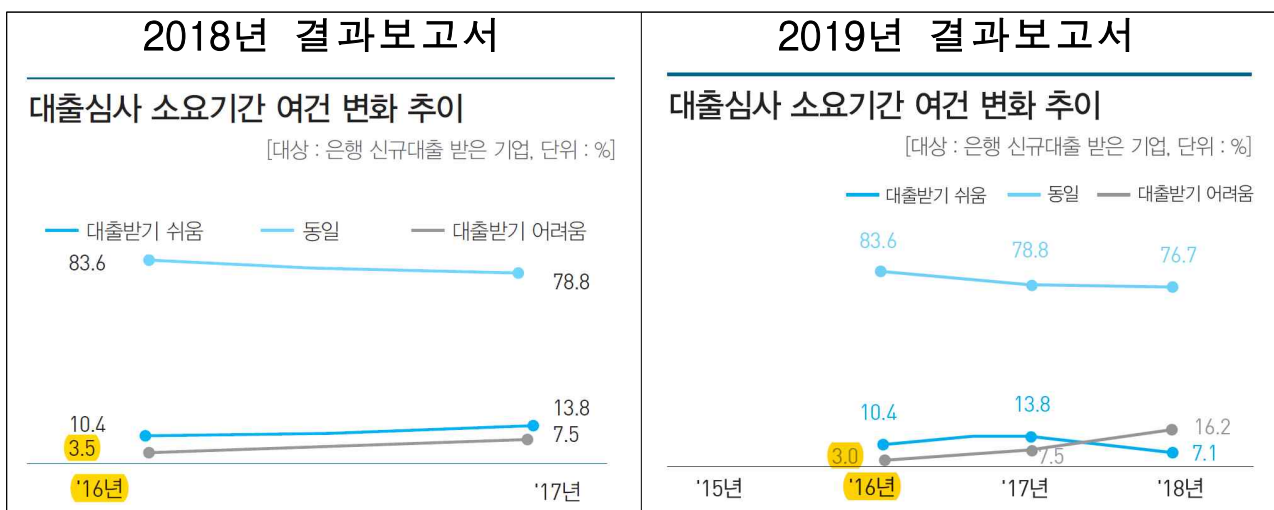
□ 간행물(보고서) 검토 결과

○ 외부자금조달 사정 변화 추이(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2017년 외부자금조달 사정의 보통 비율이 2019년 보고서에는 62.2%로 잘못 기록됨

○ 대출심사 소요기간 여건 변화 추이(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2016년 대출심사 소요기간의 ‘대출받기 어려움’ 응답비율이 2019년 보고서에 3.0%로 잘못 기입됨
- 결과보고서에서는 2016년 대출심사 소요기간의 ‘해당없음(2.4%)’ 응답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여건 비율 합계가 100.0%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임

□ 개선 방안

- 공표된 결과와 마이크로데이터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통계 자료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작성기관은 조사 완료 시 전문조사업체로부터 파일설계서* 등을 제공받아 관리해야 함
- * 자료의 구조를 나타내는 설명서(조사표문항, 항목명, 코드, 코드명, 시작 컬럼, 길이 등을 포함)
- 시계열 자료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과거년도 자료에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나. 응답률 분석

□ 항목 무응답 분석 결과

- ‘총 차입금액’ 및 ‘총 대여금액’ 항목에 대하여 업종 대분류별 항목 무응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36> 총 차입금액과 총 대여금액 항목무응답률

(단위 : 개, %)

업종대분류	총 차입금액		총 대여금액	
	사례 수	모름/거절 비율	사례 수	모름/거절 비율
C 제조업	2,139	8.3	1,097	1.3
F 건설업	1,609	1.9	1,496	0.0
G 도매 및 소매업	1,292	0.0	610	2.4
H 운수 및 창고업	193	0.0	93	0.0
I 숙박 및 음식점업	242	0.0	45	0.0
J 정보통신업	205	0.0	104	20.0
L 부동산업	105	24.8	131	19.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	0.0	95	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4	0.0	130	0.0
P 교육 서비스업	357	0.0	138	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0.0	11	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4	10.0	7	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6	0.0
전체	6,422	3.8	4,103	1.8

- (총 차입금액) 부동산업의 경우 항목무응답률이 24.8%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총 대여금액) 정보통신업과 부동산업인 경우 항목무응답률이 각각 20.0%, 19.8%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계열관계 회사와 거래한 총차입금액’ 과 관련된 조사항목에서의 항목무응답률은 4.8%~6.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무응답 사유를 ‘모름’, ‘대외비로 응답할 수 없음’ 으로 파악하고 있어 무응답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이 어려움

<표 2-37> 총차입/대여금액 관련 조사항목의 항목무응답률

(단위 : 개, %)

구분	Q19_2_11	Q19_2_12	Q19_2_21	Q19_2_22
	문19-2. 계열관계 회사와 거래한 총 차입금액 (백만원)	문19-2. 계열관계 회사와 거래한 평균 차입금리 (%)	문19-2. 계열관계 회사와 거래한 총 대여금액 (백만원)	문19-2. 계열관계 회사와 거래한 평균 대여금리 (%)
응답되어야 하는 수	99	99	105	105
항목무응답	6	6	5	5
항목 무응답률 (%)	6.1	6.1	4.8	4.8

□ 단위 무응답 분석 결과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응답률(조사완료표본/접촉조사표본*100)은 17.1%로 상당히 낮은 편이나 무응답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음
-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응답률은 9.3%~32.1%로 나타났으며, 업종 대분류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응답률이 12.2%로 가장 낮았음

<표 2-38>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응답률

(단위 : %)

구분		종사자규모						합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C	제조업	13.9	14.3	16.0	19.5	21.2	29.1	16.8
F	건설업	13.2	14.3	16.6	19.4	20.6	18.2	16.3
G	도매 및 소매업	9.3	11.0	15.8	15.9	14.9		12.2
H	운수업	20.0	18.7	18.1	18.3	16.3	31.1	19.7
I	숙박 및 음식점업	14.4	22.0	23.2	29.4	32.1		20.5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6	9.9	12.6	14.6	17.5	18.1	13.0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3	22.7	19.2				21.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6	13.1	22.2	16.4	15.8	14.6	16.4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7	21.7	21.3	21.7	18.2	17.6	20.2
P	교육 서비스업	22.4	18.1	19.2	13.2			19.2
Q	보건업	20.9	22.3	23.5	24.6	24.4	19.4	22.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7	22.7	22.9	18.5	16.1		21.0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9	20.8	22.0	15.1			20.1
합계		14.7	15.4	17.4	19.1	19.7	23.9	17.1

□ 개선 방안

- 특정 항목에 대한 무응답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공표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변경승인 필요

* 총 차입금액 - 부동산업 / 총 대여금액 -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이 응답률이 낮은 업종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 표본관리

□ 표본 대체 방안 검토

- 원표본 외 4배수의 대체 표본을 준비하여 단위 무응답 발생시 표본 대체*하여 조사함

* 원표본과 층화변수 및 정렬변수가 동일하면서 가장 가까운 표본 활용

- 목표표본 수 4,500개를 확보하기 위해 총 26,902개의 기업체에 접촉하여 4,601개 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함
- 26,902개의 기업체에 접촉하여 4,601개 기업체를 조사하고 22,301개의 기업체가 표본대체되었으나, 표본대체 사유 파악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표 2-39>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접촉 조사대상 수

(단위 : 개)

구분		종사자규모						합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C	제조업	2,959	2,611	3,027	1,774	1,351	530	12,252
F	건설업	455	446	429	253	252	148	1,983
G	도매 및 소매업	901	582	532	245	194		2,454
H	운수업	195	198	271	224	240	148	1,276
I	숙박 및 음식점업	397	232	181	102	56		968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0	343	381	246	200	116	1,606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6	110	125				37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4	305	311	195	184	103	1,412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9	175	230	221	242	165	1,212
P	교육 서비스업	241	215	198	91			745
Q	보건업	345	283	264	232	164	67	1,35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69	97	105	92	118		581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6	183	205	93			687
합계		6,817	5,780	6,259	3,768	3,001	1,277	26,902

- 1개 표본을 조사하기 위해 평균 5.76개의 표본에 접촉하며,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로는 3.11~10.73개의 표본에 접촉함

<표 2-40> 업종 대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평균 접촉표본 수

(단위 : 개)

구분		종사자규모						합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C	제조업	7.18	6.98	6.25	5.13	4.71	3.44	5.62
F	건설업	7.58	6.97	6.04	5.16	4.85	5.48	6.01
G	도매 및 소매업	10.73	9.09	6.33	6.28	6.69		7.82
H	운수업	5.00	5.35	5.53	5.46	6.15	3.22	5.12
I	숙박 및 음식점업	6.96	4.55	4.31	3.40	3.11		4.47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41	10.09	7.94	6.83	5.71	5.52	7.5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4.69	4.40	5.21				4.7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83	7.63	4.51	6.09	6.34	6.87	6.38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84	4.61	4.69	4.60	5.50	5.69	4.99
P	교육 서비스업	4.46	5.51	5.21	7.58			5.69
Q	보건업	4.79	4.49	4.26	4.07	4.10	5.15	4.4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23	4.41	4.38	5.41	6.21		4.93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2	4.82	4.56	6.64			5.26
합계		6.29	6.07	5.32	5.56	5.34	5.05	5.67

□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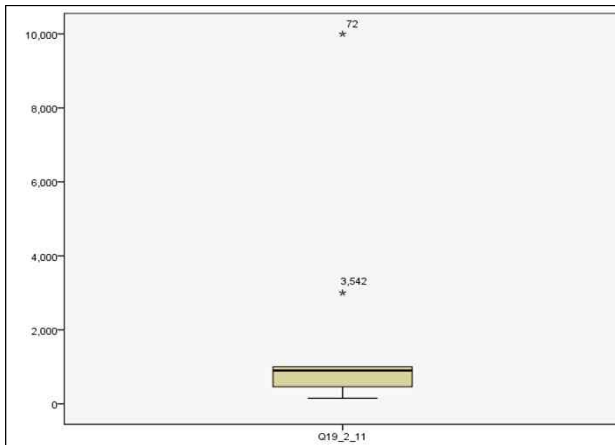
- 휴·폐업, 응답거부, 연락불가 등 표본대체 현황 무응답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 조사방법, 조사문항 수, 문항 난이도, 조사원의 능력, 조사원의 업무량 등
- “3.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진단(p16)” 에서 제시한 <모집단 구축방안>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조사모집단을 구축하고 구축된 조사모집단을 이용하여 조사
 - 현재 표본추출틀로 이용하고 있는 전국사업체조사에는 활동 여부 구분 항목이 없어 실제 조사를 나가서야 활동/비활동*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표본대체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당해연도 매출액 및 상용 근로자가 없는 기업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라. 이상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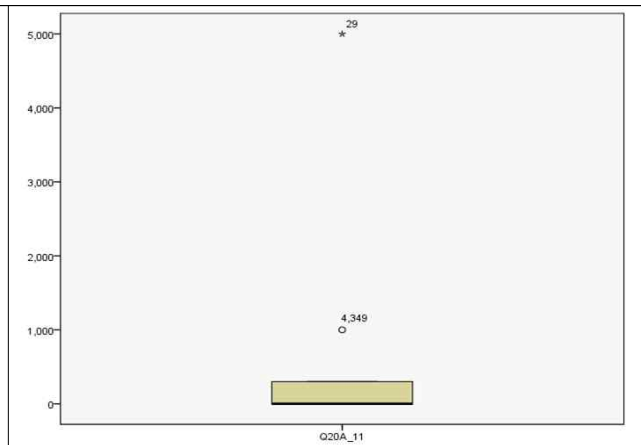
- 표본설계 내역서에 의하면 원저화 평균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양적자료 분석결과 이상치로 판단되는 값이 총 6건 존재함

총 차입금액에 대한 상자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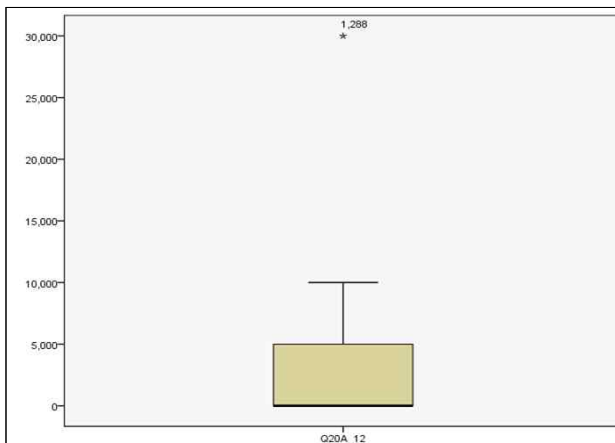
총 차입금액 3,000백만원 이상 (2건)

계획 중인 외부자금(은행)
조달액(운전자금)에 대한 상자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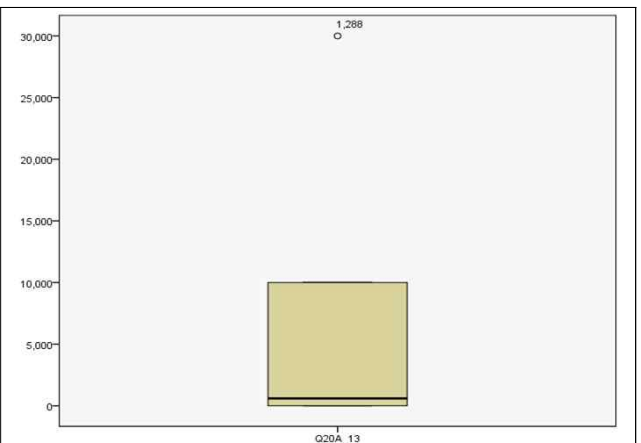
계획 중인 외부자금(은행) 조달액(운전자금)
1,000백만원 이상 (2건)

계획 중인 외부자금(은행)
조달액(시설자금)에 대한 상자그림



외부자금(은행) 조달액(시설자금)
30,000백만원 이상 (1건)

계획 중인 외부자금(은행) 조달액(합계)에
대한 상자그림



외부자금(은행) 조달액(합계)
30,000백만원 이상 (1건)

□ 개선 방안

- 총 차입금액, 계획 중인 외부자금(은행) 조달액과 같은 개방형 질문은 응답 기록에 대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 중위수, 사분위수 등 다양한 통계량을 분석하여 이상치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이상치로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치 유형별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

<참고> 이상치 탐색 및 처리방법

• 이상치의 판단

- (1) $Q_1 - 1.5 \times IQR$ 와 $Q_3 + 1.5 \times IQR$ 의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Q_1 : 제1사분위수, Q_3 : 제3사분위수, $IQR = Q_3 - Q_1$: 사분위수범위)
- (2) $\mu - 2\sigma$ 와 $\mu + 2\sigma$ 를 벗어나는 경우

• 이상치의 처리

- (1) trim : '연속형 변수'를 크기순으로 정렬한 뒤 데이터의 양 끝 5%의 값을 제거하는 방법
- (2) Winsorized : '연속형변수'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한 뒤 데이터의 양 끝 5%에 해당하는 값을 직전 값으로 대체
- (3) 가중치 조정방법 : 이상치 값 자체를 바꾸거나 제외하지 않고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이상치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는 중분류*종사자규모 층의 데이터가 충분히 크지 않아 모수 추정 시 Winsorized(5%, 95%)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처리함

마. 관련통계와 비교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와 유사한 통계 검토

- 현재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와 유사한 통계로는 중소기업 금융조사(NSSBF),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등이 있지만 비교는 하고 있지 않음

- 중소기업 금융조사(NSSBF) : 미국 FRB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금융현황 조사(5년 주기)
-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서 공동 실시하는 가계 생활수준, 자산, 부채 및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패널조사(1년 주기)
-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관련 실태조사(1년 주기, 제조업 기반 300개 중소기업, fax, e-mail, 전화조사 병행)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기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월간조사
- 중소기업 기본통계 :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과 협업해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공표함('19.11.)

□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 검토 결과

- 항목별 국내 유사 통계 및 자료
 - 경기상황 및 전망, 자금사정 및 자금수요 전망 : 기업 경기조사(한국은행), 제조업 경기조사(산업통상자원부), 여성기업 실태조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중소벤처기업부)
 - 외부차입금 상황 및 전망 :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한국은행)
 - 판매 및 구매대금 결제 현황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실태조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차입여건 변화 :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한국은행)
- 2018년, 2019년의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신규대출 금리와 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2-41>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신규대출 금리와 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비교

(단위 : %)

구분			금리	
			2018년 기준	2019년 8월 기준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	은행	담보대출	3.64	3.15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3.78	3.44
		신용대출	4.56	4.67
	비은행 금융기관	담보대출	6.93	5.41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3.38	3.45
		신용대출	8.78	7.74
	정책자금대출		2.85	2.92
	사채 차입금리		13.29	6.55
	계열 관계 회사와의 자금거래	차입금리	3.21	2.80
		대여금리	3.63	2.67
한국은행	은행	중소기업대출	3.88	3.65
		기업일반자금대출	3.45	3.24
	비은행 금융기관	종금사 기업자금대출	8.24	7.23
		종금사 일반신용대출	22.15	18.28
		신협 기업자금대출	4.15	4.51
		새마을금고 일반대출	4.27	4.38

* 신용보증서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보증재단 등)으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

- 정책자금대출과 사채차입 및 대여금리 등과 같이 중소기업금융 실태조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종금사, 신협, 새마을금고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는 한국은행에서만 보유하고 있어 두 통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어 보임

○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중소기업 범위<붙임 9>

- 기업등록부를 모집단으로 이용하면서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 뿐만아니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도 포괄
- 기준시점 당시 폐업신고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영리기업으로 매출액, 임금근로자가 없는 기업과 현장에서 조사된 미등록 기업도 작성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됨

*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

□ 개선 방안

-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발간하는 통계 자료와 비교분석이 가능하지만 조사대상, 조사기준 시점, 문항 구성 등의 차이를 고려한 비교분석이 필요함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와 유사한 통계들을 비교할 때, 비교 기준 등 차이로 인해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을 경우 결과보고서 등에서 통계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음

바. 수준분석

□ 2018년 대비 2019년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외부자금조달 사정과의 교차분석

- 2018년 대비 2019년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외부자금조달 사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가중치 미적용)을 실시함

<표 2-42> 2018년 대비 2019년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외부자금조달 사정 분석

외부자금 조달상황	경영상황					
	매우 호전	다소 호전	동일	다소부진	매우부진	전체
매우 원활	6	9	12	5	1	33
	18.8%	1.2%	0.6%	0.4%	0.3%	0.7%
원활	10	231	265	89	20	615
	31.3%	31.2%	12.6%	6.4%	6.1%	13.4%
동일	13	444	1,624	835	131	3,047
	40.6%	59.9%	77.3%	59.7%	40.1%	66.2%
곤란	2	55	193	447	124	821
	6.3%	7.4%	9.2%	32.0%	37.9%	17.8%
매우 곤란	1	2	8	23	51	85
	3.1%	0.3%	0.4%	1.6%	15.6%	1.8%
전체	32	741	2,102	1,399	327	46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개인기업은 2018년 대비 2019년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외부자금 조달 사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 = 1224.689$, $p < .001$)
- 2018년 대비 2019년 전반적인 경영상황에서 ‘매우 호전’, ‘다소 호전’, ‘동일’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외부자금조달 사정이 ‘원활’, ‘동일’ 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경영상황에서 ‘다소부진’, ‘매우부진’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외부자금조달 사정이 ‘동일’ 과 ‘곤란’ 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개선 방안

- 경영상황, 외부자금조달 사정 등과 같은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5.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FGI 실시)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와 관련된 전문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개선 및 조사결과 신뢰성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

가. FGI 결과 (전문 이용자그룹)

□ 자료의 정확성

- 대출금리나 외부자금차입금현황 등 응답하기 민감한 항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조사원 교육이 필요함

□ 조사항목 개선

-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K-BIZ 중소기업중앙회, 2017)는 제조업 기반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실태 및 자금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원활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조사임
 - 이 조사는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미승인 통계로 활용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필요시 주요 조사항목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에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입안자나 통계 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Q.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꺾기(금융상품 강요) 근절
- ② 담보대출 관행개선
- ③ 경기 불황 시 中企대출 축소관행 개선
- ④ 정책자금 지원 확대
- ⑤ 신·기보 보증 확대
- ⑥ 기술금융 확대
- ⑦ 장기자금 지원
- ⑧ 관계형금융* 활성화
- ⑨ 기타()

* 관계형금융

: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재무제표 등 정량적 정보 외에 현장방문, 관찰 등으로 얻은 정성적·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법,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부족해도 사업전망 양호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가능

□ 표본크기 확대

- 현재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표본설계는 업종 중분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과 공표는 업종 대분류별로 제공되어 정보의 활용도가 미흡함. 업종 중분류별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본크기의 확대가 필요함

□ 정보제공의 세분화

- 업종 대분류별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제조업의 경우 업종을 범주화하여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있는 자료만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이용자들에게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홍보 및 활용도 강화

- 현재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통계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임. 공표예정 일자나 보도자료 등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목적과 주요 조사 결과 내용을 통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심층 분석

- 현재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실태 파악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보고서의 형태를 유지하되, 관련 통계 등과의 비교 및 심층분석을 위한 별도의 보고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시스템 구축

- IBK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금융기관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업이 필요함

나. FGI에서 도출한 주요 개선사항

- 전문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FGI 실시 결과, 총 7개 부문에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

<표 2-43> FGI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부문	문제점	개선사항
정확성	대출금리나 외부자금차입금 현황 등 응답하기 민감한 항목의 정확성 검토	민감한 항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조사원 교육 필요
조사항목	조사항목에 대한 통계 이용자의 요구 반영 미흡	통계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조사표 개선안 마련 필요
표본크기 확대	업종 대분류별 정보만을 제공	업종 중분류별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의 확대 필요
정보제공의 세분화	제조업에 대한 정보 미흡	제조업의 경우 업종을 범주화하여 좀 더 세분화된 정보 제공 필요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여 자료의 활용도 향상
홍보 및 활용도 강화	홍보 및 활용도 미흡	공표예정 일자나 보도자료 등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에 대한 홍보 및 활용도 강화
심층 분석	관련 통계 등과의 비교 및 심층분석 미흡	관련 통계 등과의 비교 및 심층분석 필요
정책금융기관 통합시스템 구축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통계 정합성 및 효율성이 떨어짐	정책금융기관들이 협업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마련

III

행정자료 활용방안 검토

◇ 행정자료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조사항목 대체 가능 여부 판단

1. 검토 배경

- ☐ 행정자료 활용을 우선 검토함으로 응답부담 경감 및 통계생산의 경제성 제고 필요
- ☐ 행정자료 우선활용에 제약이 되는 항목의 개선을 통한 행정자료 우선활용 확대 필요

2. 검토 방법

- ☐ 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 구축 가능성 검토
- ☐ 행정자료를 활용한 항목 대체 가능성 검토(행정자료관리과)

3. 검토 결과

가.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 검토

- ☐ 기업공개/상장, 유상증자 경로, 계열사 여부(국세청, 금융위원회)

나.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결과 및 사유

- ☐ 판단결과 : 활용 불가(주요항목 10%미만 활용가능)

구분	활용불가사유	조사 항목
행정자료 있음	활용 가능	• 일반항목: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기업형태, 설립연월, 상장 및 외감 여부, 주 사업자 소유형태,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물 및 서비스품목, 매출액, 대표자(성명, 성별, 나이), 상시근로자 수 등 • 주요항목: 경영상황및자금전망 1개항목(외부차입금 유무), 신규자금 조달현황 2개항목(기업공개/상장 및 유상증자 경로, 계열사 여부) 등
행정자료 없음	행정자료 범위외	• 일반항목: 매출액 중 수출비중, 영업구조, 하도급 여부 • 주요항목: 신규자금조달현황(17개항목), 판매및구매자금결재현황(3개 항목), 은행이용실태(2개항목), 금융기술, M&A 등(3개항목) 등

행정자료 없음	응답자 경험/의식	주요항목: 경영상황 및 자금전망(11개항목), 신규자금조달현황(16개항목), 향후조달계획(1개항목), 자금운용현황(3개항목), 판매및구매 자금결재현황(6개항목), 은행이용실태(4개항목), 금융기술, M&A 등(12개항목) 등
------------	--------------	---

다. 기본항목 등 일부 행정자료 활용방안

□ 모집단 연계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SBR) 활용가능

- 제공항목 : 기준년도, 사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성별, 대표자출생년도,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업체 매출액 등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대체 비식별번호로 제공하므로 타 행정자료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직접조사 필요

- 구축 및 제공 일정 : 기준년 15개월 후 제공(' 18년 기준 : ' 20.3.)

- 분기_SBR 활용가능

- 제공범위: ' 18년 4분기~' 19년 1분기 기준 SBR
- 제공항목: 기준년도, 기준년월, 개인법인가분, 사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성별, 소재지, 창설연월 등
- 이용범위: 명부용(표본설계, 제공용), 분석용
- 구축 및 제공 일정: 익분기 구축하여 익익분기 서비스(4개월 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자 료 입수일정				1분기 입수			2분기 입수			3분기 입수			4분기 입수					
작 성 및 제 공 일 정				1분기 작성 및 제공			2분기 작성 및 제공			3분기 작성 및 제공			4분기 작성 및 제공					

4. 기대효과

- 행정자료 우선활용 확대를 통한 응답부담 경감, 예산절감, 정합성 확보 등 통계생산의 경제성 및 신뢰성 제고
-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활용기관 간 자료공유로 행정자료 활용도 및 통계작성 효율성 제고

IV 결론

◇ 통계 작성절차에 따라 5개 부문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로 총 10개의 개선과제 도출하였음

1. 주요 개선사항

가. 공표예정 시기 사전 예고

-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는 공표예정 시기를 사전에 예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공표시기를 예고하고, 예고한 공표시기 준수 필요

나. 표본추출틀 변경

-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되었고, 표본추출단위가 기업체이므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보다는 기업체의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표본설계 개선

<표 4-1> 표본설계부분 세부 개선과제

구분	세부사항
표본크기	• 표본크기 검토 및 표본크기 산출식 제시
층화기준	• 층화기준(종사자 수 → 매출액) 개선
가중치	• 사후조정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가중치 제시
추정식	• 가중치를 포함한 모수 추정식으로 개선
상대표준오차	• 주요 변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산출 및 공표범위 검토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는 업종 중분류별 종사자 규모별로 표본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종 54개 층과 종사자 규모 6개 층으로 전체 층의 수가 324개로 현재의 표본규모로는 층별 통계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개선된 표본설계에서는 층화추출법에 맞는 표본크기 산출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통계등록부를 조사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층화기준을 업종과 매출액 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표본설계에 따라 설계가중치와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 조정을 위한 무응답조정가중치 및 층별 모집단 규모에 따른 사후 조정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과 모수 추정식을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 계획 중인 외부자금 조달액과 같은 주요변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제공하여 제시된 통계의 신뢰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뢰성 있는 결과 제공을 위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한 공표범위의 검토가 필요함

라. 조사표 개선

- 조사항목에 대한 통계이용자들의 요구 반영이 미흡한 상황으로 전문가 및 이용자들을 파악하여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보기항목, 질문표현 등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사표 개선이 필요함

마. 자료수집 및 관리

-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응답률(조사완료표본/접촉조사표본*100)은 17.1%로 나타남.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문조사업체에 업무 위탁 시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표본규모 검토 결과, 설계표본수와 조사결과 표본수가 불일치하고, 표본대체방법도 부정확하여 표본의 대표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표본대체 지침의 정확한 준수 및 관리 필요
 - 특히 업종을 달리하여 대체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만 대체를 실시하는 등 표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면접소요시간, 평균방문횟수 등 파라미터를 관리하여 불응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원 업무량 측정 등의 자료로 활용
- 무응답 집단을 분석하여 무응답의 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고 무응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항목응답률이 높아서 공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 필요

바. 자료입력 및 처리

- 이상치 탐색 등을 자료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집계 결과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최종 자료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총 차입금액 항목에서 부동산업이, 총 대여금액 항목에서 정보통신업과 부동산업의 항목무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사. 문서화 및 자료제공

- 통계작성 변동사항 및 절차별 업무매뉴얼을 문서화하여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자료처리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개별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업종 대분류별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제조업의 경우 업종을 범주화하여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아. 홍보 및 활용도 강화

- 현재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통계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임. 공표예정 일자나 보도자료 등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통계 등과의 비교 및 심층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자. 사후관리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주요 이용자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연구원 등으로 파악됨
-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통계 주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통계 이용자들을 확대하고 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장기 로드맵

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통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나. 통계 전문인력 확충

-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자료처리 일관성을 확보하고,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표 4-2>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개선과제 및 개선 방안

통계작성절차	개선과제	세부 개선 방안
통계작성 기획(1개)	공표시기 준수	• 사전에 공표일정을 예고하고, 공표일정 준수
통계설계 (3개)	표본추출틀 변경	• 표본추출틀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대신 기업통계등록부(SBR)로 변경
	표본설계 개선	• 종사자수→매출액으로 층화기준 개선 • 가중치 및 추정식 개선 • 표본크기 검토 및 산출식 제시 • 주요 변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산출 및 공표 범위 검토
	조사항목·조사표 개선	•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조사표 개선
자료수집 (2개)	응답률 제고	• 무응답 원인 및 특성 분석을 통한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항목무응답률 및 표본대체율 관리) • paradata 관리 및 현장조사에 활용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 준수	• 전문조사업체에 업무 위탁 시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 반영 필요
자료입력 및 처리 (2개)	자료 분석 강화	• 이상치 탐색 등 자료에 대한 분석 강화
	자료 검증 강화	• 집계 결과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등 최종 자료에 대한 검증 강화
문서화 및 자료제공 (1개)	통계작성 자료의 문서화	• 통계작성 변동사항 및 절차별 업무매뉴얼 문서화 • 홈페이지 조사일정 등 수정
사후관리 (기관 관리과제) (1개)	통계 활용 확대	• 결과 홍보 및 활용 강화

붙임1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제1부 기본현황

1. 통계명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2. 작성목적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및 중소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3. 작성근거법령	일반통계(승인번호 제303003호)																			
4. 작성주기	① 매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1년 ⑤ 기타(주기: 년)																			
5. 공표주기 * 보도 또는 간행물 발간 주기 체크()	① 매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1년 ⑤ 기타(주기: 년)																			
6. 조사대상 * 조사의 대상이 되는 단위, 모집단, 포괄범위, 조사규모 등을 기입 - 조사 규모: 전수조사 또는 표본 조사에 체크하고 ()에 조사단위수 기입	• 조사단위 • 모집단 • 포괄범위 • 조사규모	① 개인 ② 가구 ③ 사업체 ④ 기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전국 ① 전수조사() ② 표본조사 (√)																		
7. 조사 기준시점	2018.12.31.	8. 조사기간(실사기간)	2018.1.1.~12.31(2019.5.~7.)																	
9. 조사방법	① 면접조사 ② 우편조사 ③ 전화조사 ④ 인터넷조사 ⑤ 기타()																			
10. 조사직원 구분	① 상용조사원(공무원) ② 상용조사원(공무원 외) ③ 임시및일용조사원 ④ 기타(조사 전문기관 조사원)																			
11. 성별통계 작성여부 * 성별 조사항목이 있는지, (조사된 사항이) 통계표에 반영되어 있는지 체크()	• 조사항목 • 통계표	① 있다 ② 없다(사유:) ① 있다 ② 없다(사유: 모집단 특성상 성별에 따른 통계치 제시는 편향이 존재 - 제조업과 서비스업 여성 ceo비중 현저히 차이)																		
12. 공표시기	2019년 10월 15일																			
13. 공표방법(간행물, 웹 등)	간행물 명칭 :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research.ibk.co.kr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여부 : N																			
14. 통계작성체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th><th colspan="2">기관명(소속부서)</th></tr> <tr> <th>① 직접수행</th><th>② 용역수행</th></tr> </thead> <tbody> <tr> <td>조 사 기 획</td><td>√</td><td>√</td></tr> <tr> <td>현 장 조 사</td><td></td><td>√</td></tr> <tr> <td>자 료 처 리</td><td></td><td>√</td></tr> <tr> <td>결과분석·공표</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명(소속부서)		① 직접수행	② 용역수행	조 사 기 획	√	√	현 장 조 사		√	자 료 처 리		√	결과분석·공표	√	√
	기관명(소속부서)																			
	① 직접수행	② 용역수행																		
조 사 기 획	√	√																		
현 장 조 사		√																		
자 료 처 리		√																		
결과분석·공표	√	√																		

제2부 통계작성여건

I. 인적자원 여건

○ 통계담당 인력현황 및 전문성

직급/성명	성별	구체적인 통계업무	통계 업무 전담 정도 (본인 업무 대비)	현 보직 근무연수	통계업무 경력	통계교육 이수 실적 (최근 3년간)
이○○	남	총괄	10%	1년 8월	1년 8월	0회 0일
황○○	남	실무	50%	3년 8월	3년 8월	1회 1일
평균			30%	2년 8월	2년 8월	0.5회 0.5일

기입요령

□ 통계담당 인력현황 및 전문성

○ 직급/성명

해당 통계의 담당과(팀)장급 이하 직원의 직급과 성명을 기입함(일용직 제외)

○ 구체적인 통계업무

해당 통계의 기획, 분석, 행정, 지원, 자료처리, 현장조사 등 업무내용을 기재

○ 통계업무 전담정도

담당업무 중 해당 통계업무 비중을 기입

예) 해당 통계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100%, 겸임자인 경우 30% 등으로 기재

○ 현 보직근무연수

현재의 직책 또는 직무를 담당한 기간 기재

○ 통계업무 경력

현 보직기간과 과거 경력 중 통계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 통계관련 교육훈련 이수 실적(최근 3년간)

최근 3년간의 통계관련 교육회수 및 교육일수를 각각 합산하여 기재

○ 평균

통계담당 인력현황에 기재된 담당자들의 통계업무 전담정도, 현 보직 근무연수, 통계업무 경력, 통계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여 각각 기입

II. 물적자원 여건

1. 통계작성관련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체실시			
인건비			
외부기관 위탁	242,490	259,400	253,550
인건비			17,409
합 계	242,490	259,400	253,550

2.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현황

통계업무단계	통계생산	통계관리	통계서비스
시스템 명칭			
통계분석패키지	SPSS		

기업요령

1. 통계관련 예산규모

(조사주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3개년 예산, 조사주기가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조사년도** 기준으로 과거 3개년 예산을 기업)

○ 자체 실시 비용

- 조사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귀 부서에서 직접 통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실사지도여비, 교육여비 등 포함)
- 조사(또는 자료수집)를 위해 채용한 임시 또는 일용 조사원 인건비 등이 산출 가능하면 별도 기재

○ 외부기관 위탁 비용

- 산하기관·단체, 민간조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총예산(전문 조사업체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비용 포함)
- 조사(또는 자료수집)를 위해 채용한 임시 또는 일용 조사원 인건비 등이 산출 가능하면 별도 기재

2.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현황

○ 시스템 명칭

- **통계생산** : 통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포함, 각종 조사시스템 뿐 아니라, 모집단관리 시스템, 전자조사시스템 등도 포함
(예시) 산업통계분석시스템, 인구동향조사시스템, 기업체모집단시스템
- **통계관리** : 통계 원시자료 및 집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예시)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통계DW시스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국가통계DB관리시스템
- **통계서비스** : 통계 원시자료 및 집계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

제3부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 인식

○ 1~10번 진단항목에 대한 통계작성 담당자의 평가의견을 5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란에 “○”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직관리실태 부문(1~5번) 평가 시에는 하위요소를 고려하여 각 항목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조직 관리 실태	1. 조직의 리더(기관장)가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통계품질에 관한 조직의 비전 제시 ■ 조직문화의 변혁을 통한 가치관의 정립			√		
	2. 조직의 리더(부서장)는 통계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통계품질에 대한 이해도 ■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절한 지원 및 배분 ■ 조직리더에 의한 통계품질관리 추진			√		
	3. 조직리더(부서장)가 통계품질관리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및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 통계품질에 관한 경영방침의 수립 ■ 이용자 중심의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전략목표 수립 ■ 합리적인 방침과 전략 전개 ■ 적절한 시스템에 의한 타당한 실행계획 수립				√	
	4. 작성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가 되고 있는가? ■ 통계품질관리 전담부서 설치 또는 전담인력 배치 ■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계획 ■ 품질 관련 교육수요파악 및 교육이수 실적 관리			√		
	5. 통계담당 직원은 품질관리 능력 개발 및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통계품질을 위한 전문적 모임의 활성화 ■ 통계품질 제고 동기부여			√		
통계 담당 자 인식	6.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 현재 통계작성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9.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통계작성 과정에서 품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I. 통계작성시 애로사항

- 통계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담당자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자유롭게 기술

통계작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자 중심의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전략목표를 수립하거나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조직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임

II. 통계 품질관리기반 확보를 위해 개선할 사항

-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검토 및 통계담당자/관리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인지한 개선 필요 분야를 상세하게 기술

일관성 있는 통계 생산과 더불어 조사결과 내용이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 전문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붙임2

세부작성절차별 점검표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문항 하단에 제시된 세부 품질요소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에 체크(☑)한 후 이를 고려하여 각 문항을 평가하고 관련 근거자료 및 의견을 제시 (더 자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 문서로 첨부)
-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에 기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 및 의견을 제시해야 함
- 해당 통계와 관계없는 문항인 경우에는 의견란에 ‘관계없음’으로 기입함

01

통계작성 기획

1-1. 통계작성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통계작성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명확성 여부
- ☒ 주된 활용분야에 대한 명시 여부
- ☒ 유사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근거자료>

- 조사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국내 중소기업의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
 - (필요성) 국내 중소기업 금융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공식 국가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성
- 주요 활용분야
 - (내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 제2금융권 등)이외의 외부차입(사채, 계열사간 거래 등)을 포괄하여 외부차입금 현황 파악 가능
 - (외부)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학계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유사통계 사전 검토
 - 중소기업 금융조사(NSSBF) : 미국 FRB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금융현황 조사(5년 주기)
 -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생활수준, 자산, 부채 및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패널조사(1년주기)
 -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관련 실태조사(1년 주기)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 국민은행에서 실시했던 중소기업 금융이용 전반에 관한 통계

<의견>

- 조사 목적 및 필요성, 주요 활용성은 결과 보고서상에 작성

1-2.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주된 이용자를 파악하여 이용자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 ☐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여부
- ☒ 이용자 의견을 통계작성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주요 이용자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연구원
- 조사표 및 결과 보고서 개선사항
 - 2017년 조사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문항 추가
 - 2018년 조사 : ‘무인점포’ 관련 문항 추가, 결과 보고서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 도식화
 - 2019년 조사 : ‘상생결제’ 관련 문항 추가, 다양한 결과 제시를 위해 보고서 그래프 포맷 변경

<의견>

-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표 및 결과 보고서를 매년 개선하고 있음
 - (3.12) 기타문항(상생결제) 변경을 위한 내부회의 진행(부장, 팀장, 통계담당자 회의)
 - (3.15) 조사표 개선(논리구조 강화-문7, 문24의 대금수취일 추가 등)을 위한 용업업체 참관 내부회의 진행
- 2019년 조사 완료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 중 - 향후 진행 예정

1-3.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자문회의 등을 통해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이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근거자료>

- 2019년 개념 및 용어 개선 사항(조사표에 반영)
 - ‘BtoB’, ‘상시근로자수’,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 용어 설명 보완
 - 추가 문항(대금수취일/대금지급일)을 구성하여, 판매(구매)대금 수취(지급)방식별 개념을 구분함

<의견>

- 조사표 검토 단계에서 내부회의를 통해 주요 개념,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있음

1-4. 국내·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가 국내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
☐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
 * (예시) 분류체계 :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표준질병·사인분류, 표준무역분류 등

<근거자료>

- 2019년 조사는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함
 -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표본제외업종 제외
 -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으로 정의
 - 회사법인 중 사업체 구분이 공장, 지사(점), 영업소 및 외국법인의 본·지점 제외
 - 종사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이 아닌 기업체 제외

<의견>

-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활용 ☞ 10차 표준산업분류 체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매출액 기준을 따라야 하나 현재 전국사업체조사에서 평균 3년치의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음

1-5. 통계작성 개편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개편(표본, 기준년, 구성지표 등의 개편 및 분류체계, 조사항목, 조사표 변경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여부
☐ 개편에 필요한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검토 여부
☒ 개편작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회의 등 개최 여부
☐ 개편작업 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여부
☐ 정기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편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중소기업 정의가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표본변경 검토 중
- 표본 변경에 따른 시계열 훼손 문제 등을 내부회의 및 자문을 통해 검토
 - 3월 15일 조사업체 참관 내부회의 진행(팀장, 통계담당자, 업체), 표본 및 전문가 자문의견 검토

<의견>

2-1. 통계 작성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의 정의가 명확한지 여부
☐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목표모집단의 정의 : 우리나라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체
- 조사모집단의 정의 :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결과
 - 전산업 중소기업, 단,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표본제외업종* 제외
 - *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담배제조업(C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항공운수업(H51), 협회 및 단체(S94) 제외
 -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으로 정의
 - 회사법인 중 사업체 구분이 공장, 지사(점), 영업소 및 외국법인의 본·지점 제외
 - 종사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이 아닌 기업체 제외

<의견>

-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차이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2-2. 조사표는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조사항목 문구 및 배열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 조사항목 배열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여부
☒ 조사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표 구성이 시각적 효과(음영, 기호, 굵은 글씨 등)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조사항목의 문구 및 보기 등의 배열과 색상, 제시 방법이 통일된 형태로 구성
- 분기 및 문항 이동 로직을 화살표로 표기
- 주요 용어 설명, 각 문항별 주석 등이 제공됨
- 응답 문항 총 개수 유지

<의견>

- 조사표 작성 완료 후 추가적인 디자인 작업을 통해 시인성과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임
- 추가 문항 구성시, 시계열 유지 문항이 아닌 문항 중 결과 활용도에 따라 기존 문항 삭제 후 추가

2-3. 조사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조사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에 따른 사전조사(pretest)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 약 5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실시

<의견>

- 조사목표 4,500개의 1% 수준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조사표 검증
- 신뢰도, 타당성, 응답가능성, 효율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 확정

03

자료 수집

3-1. 조사직원을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조사목적, 기준시점, 조사대상, 조사방법, 추진일정 등 조사개요와 조사항목 해설 및 항목별 기입 요령 등을 포함하는 조사지침서(요령서) 제공 여부

☒ 조사준비, 현장 방문 시 유의사항, 불응장기부재 처리방안 등 조사직원의 현장 수행 지침 제공 여부

☒ 조사 시 자주 나타나는 오류사례, Q&A 등 제공 여부

<근거자료>

- 붙임 문서 참고

- [붙임1]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조사지침서
- [붙임2]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용어해설집
- [붙임3]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조사원 교육자료

<의견>

- 조사 관련 상세 지침서(붙임1~3)을 제공하고 조사원 교육 실시

3-2. 조사기획자는 조사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충분한 사전교육 이수 후 조사에 투입하는지 여부
- ☒ 조사표 또는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 ☒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교재를 활용하는지 여부
(예: 현장조사 사례집, 팸플릿, 동영상 등)

<근거자료>



[서울 교육]



[광주 교육]



[대구 교육]

<의견>

- 교육 일정
 - 대구 교육 : 2019년 4월 23일 오후 진행, 해당권역 SV 및 조사원 20여명 참석
 - 서울 교육 : 2019년 4월 26일 오전 진행, 해당권역 SV 및 조사원 50여명 참석
 - 광주 교육 : 2019년 4월 29일 오후 진행, 해당권역 SV 및 조사원 20여명 참석
- 교육 대상자
 - 조사관리자, 조사원, 컨택원, 내용검토원, 입력요원, 업무보조원
- 교육 방법
 - 거점별(서울/광주/대구)로 용역수행사PM과 중소기업은행담당자가 방문하여 교육진행
 - 조사원 지침서 및 조사표 및 교육자료(PPT)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 교육 내용
 - 1단계 : 조사에 대한 이해(사업 개요, 목적, 연혁, 기업규모 분류기준 등)
 - 2단계 : 조사표에 대한 이해(조사표 내용, 로직, 문항별 문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특수사례)
 - 3단계 : 실사진행에 대한 이해(조사진행 프로세스, 다양한 현장조사 사례, 조사관리 시스템)

3-3. 현장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현장조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계가 있는지 여부
- ☐ 현장지도 후 조사오류 및 시정조치 사례가 수집되고 기록되는지 여부
- ☒ 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가구 또는 사업체에 이메일, 전화, SMS 등으로 공지 여부

<근거자료>

- 현장조사 관리체계
 - ‘기업체 → 조사원 → 조사관리자 → 용역수행사PM → 중소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담당자’
-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전용 상담창구(전화, 이메일) 상시 운영
 - 운영기간 : 2019년 5월 ~ 7월 / 번호 : 02-6954-1900 / 이메일 : survey2019@kedkorea.com
- 붙임 문서 참고
 - [붙임4]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현장조사 사례집

<의견>

- 현장조사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 현장지도 후 조사오류 및 시정조치 사례에 대해서는 재교육 실시
- 응답자 사전 통지
 - 조사대상에게 사전 연락하여 협조공문 발송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안내(협조공문 : 중소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협조공문)

3-4. 조사기획자는 현장조사에 대한 단계별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응답자 1인당 평균면접시간, 조사표 1부당 평균완성시간, 평균내용검토시간 등 조사 직원 개인별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응답자 1인당 평균면접시간 : 40분정도 소요
- 조사표 1부당 평균완성시간 : 120분(조사 및 검토, 재조사 시간 포함)
- 조사원 1인당 1일 3~4개 설문 완료료 목표표로 진행하며,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정함(조사일 47일 기준, 방문조사원 35명/온라인·이메일·Fax조사원 15명 투입)
-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원 업무량
 - 방문면접조사 : 업체당 1~3회 방문, 1일 3~4건 회수(이동시간 고려)
 - 온라인·이메일·Fax조사 : 업체당 5~10회 연락, 1일 10건 이내 회수
- 조사표가 회수된 후 검증과정에서 3~4회 이상 재조사가 필요함
 - 재조사는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의견>

- 조사대상의 업종 및 지역, 규모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존재함
 -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개인사업체인 경우가 많아 회신율이 떨어짐
 - 200~299명 규모인 경우 큰 모집단 자체가 적어 어려움
 - 지방의 경우 조사 대상 기업과의 접근성이 떨어짐
 - 대출 조건, 자금운용 현황 등 문항 내용 특성상(민감도) 타 기업체조사 대비 어려움

3-5. 조사기획자는 조사직원의 조사관련 전문지식 숙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업무지식 숙지 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 ☒ 업무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을 위한 재교육 실시 여부
- ☒ 조사기간 중 교체된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근거자료>

- 2019년 조사 중 기준 미달 조사원 8명에 대해서 1:1 재교육 실시
- 최종적으로 1명의 조사원이 교체됨

<의견>

- 조사원이 조사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적합하게 하는지 조사관리자가 수시로 점검하여 일정 기준 미달의 조사원 제외(조사원 점검 방법 : 조사표 검토 및 검증, 녹취파일 확인)
- 재교육 및 교체조사원 교육은 일반 조사원 교육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3-6.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은 시의적절하게 처리되며, 모든 조사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조사표 기입자(조사직원 및 응답자)는 질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부
- ☒ 질의사항 접수 → 해결방안 마련 → 결과통보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질의사항 및 해결방안을 모든 조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전용 상담창구(전화, 이메일) 상시 운영
 - 운영기간 : 2019년 5월 ~ 7월 / 번호 : 02-6954-1900 / 이메일 : survey2019@kedkorea.com
 - 질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통보는 3단계로 진행
(1단계 : 조사원, 2단계 : 조사관리자, 3단계 : 작성기관 담당자)
- 현장지도 후 조사오류 및 시정조치 사례에 대해서는 재교육 실시

<의견>

- 조사에 대한 민원 및 문의 대응을 위해 조사 전용 상담창구(전화, 이메일) 상시 운영
 - 1차 응답 : 조사원이 자체 응답이 가능한 사항(조사방법, 조사 목적 등)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응답(로직 등 간단한 부분)
 - 2차 응답 : 조사원이 대응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사관리자가 응답(조사원의 태도, 조사 진행 간 불편사항 등)
 - 3차 응답 : 조사관리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질의에 관해서는 작성기관에 보고하여 작성기관 담당자가 응답
- 질의사항 및 해결방안은 주차별로 보고하며, '현장조사 사례집'으로 수집·작성된 후 조사원에게 배포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전반적인 자료 입력 과정에 대한 흐름도 및 지침서 마련 여부
- ☒ 자동화된 자료입력 프로그램(CAPI, CASI, ICR 등) 구축 여부
- ☒ 자동화된 입력 오류 점검 시스템 구축 여부

<근거자료>

- 붙임 문서 참고
 - [붙임5]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입력 및 내검 가이드
- 자동화된 자료입력 프로그램 URL
 - <http://survey.mros.co.kr/20190513/?resid=test>

<의견>

- 입력 및 내검 가이드 및 자동화된 자동입력 프로그램 활용
 - 분기 및 문항 이동, 문항간 논리관계, 이상치(Outlier) 등의 자료 입력단계에서 오류 파악 및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내검 실시

4-2.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규칙의 마련 여부
- ☒ 연관관계 분석에 의한 논리적 오류 점검 및 조치 여부
- ☒ 자동화된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시스템 구축 여부
- ☒ 이상치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여부

<근거자료>

- 붙임 문서 참고
 - [붙임6]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에디팅 및 리체크 가이드
- 자동화된 자료입력 프로그램 URL
 - <http://survey.mros.co.kr/20190513/?resid=test>

<의견>

- 에디팅 및 리체크 가이드 및 자동화된 자동입력 프로그램 활용
 - 분기 및 문항 이동, 문항간 논리관계, 이상치(Outlier) 등의 자료 입력단계에서 오류 파악 및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내검 실시
- 이상치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여부
 - 식별 : 문항의 특성 및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에서 발간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값의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관측치를 이상치로 식별
 - 1차 확인 : 조사표 확인(담당 조사원 및 입력원이 진행한 모든 데이터 확인)
 - 2차 확인 : 응답자에게 연락하여 응답결과에 대한 확인
 - 확인되지 않는 이상치 처리 :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저화평균(Winsorized mean) 이용

4-3. 무응답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무응답 사례를 유형별로 집계하고 분석하는지 여부
- ☒ 무응답에 대한 적절한 처리지침이 있는지 여부
- ☒ 무응답 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 무응답 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 본 조사는 무응답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단, 금리 응답 거절로 인해 관련 문항(문9, 문14-3, 문16-2, 문19-2)에 일부 항목무응답 있음

<의견>

- 기업체의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및 성별, 매출액, 매출액 중 수출비중 등은 항목무응답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조사 문항은 과도한 응답 요구시, 조사 거절(단위무응답)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목무응답을 허용
- 항목무응답 대체 :
 - 항목무응답 발생 시 조사원 재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항목무응답 내용 확보
 - 재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항목무응답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용역수행사(한국기업데이터*) 등의 2차 자료 활용
 - *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정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확인시스템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및 우리은행, 농협,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수집되며, 금융감독원의 허가하에 활용 가능
 - 항목무응답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항목 무응답 처리
- 단위무응답 대체 :
 - 단위무응답으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대체표본 제시 및 대체표본의 사용 순서(원표본과 층화변수 및 정렬변수가 동일하면서 가장 가까운 표본) 지정

4-4. 현장조사부터 집계, 분석 단계까지 적절한 내용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자료처리 단계별 업무흐름도가 있는지 여부
- ☒ 검토할 사항, 방법 등 내용검토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오류 유형과 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발생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는지 여부
- ☒ 개별 조사표 및 조사표 입력 전산파일을 보관지침 마련 및 준수 여부

<근거자료>

○ 자료 내용검토 절차

조사표 회수단계 (현장 내용검토)	- 조사항목의 기입 누락 또는 오류 사항 확인 - 항목 간 연관관계 내용검토	조사원 진행
↓		
입력 및 검증단계 (조사표 내용검토)	- 1차 내용검토 및 입력 - 2차 내용검토 및 전산내검, 에디팅 및 리체크	1차 : 조사관리자, 내용검토 전담인력 2차 : 자료분석원
↓		
종합 내용검토	- 조사완료명부 검토 - 2차 자료 검토 (DART, 용역수행사 보유 DB활용) - 통계표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용역수행사PM 중소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담당자

<의견>

○ 오류자료 처리 절차

- 자료입력 오류 : 조사표 확인 검수(담당 조사원 및 입력원이 진행한 모든 데이터확인)
- 응답 오류 : 응답자에게 연락하여 응답결과에 대한 확인 및 2차 자료확인
- 미확인 오류 처리 : 응답자 비수신 및 2차 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표본 폐기

○ 개별 조사표 및 조사표 입력 전산파일 보관 지침

- 은행의 자료 및 정보관련 규정 적용
- 자료처리 :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담긴 정보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파일에 1,2차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자료확인 : 자료 보관은 허가받은 인원에 한해 저장 보관되고 있으며, 자체 보안 프로그램으로 허가 받지 이동매체에 쓰기/읽기 금지 시스템 설정으로 관리하고 있음
- 자료 및 정보보호를 위해 조사전문기관과의 용역 체결시 비밀유지 및 자료폐기 의무 사항 항목 삽입

5-1.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관련된 자료 및 통계와의 비교분석 실시 여부

<근거자료>

○ 항목별 국내 유사 통계 및 자료

- 경기상황 및 전망, 자금사정 및 자금수요 전망 :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제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은행), 기업 경기조사(한국은행), 제조업 경기조사(산업통상자원부), 여성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소벤처기업부)
- 외부차입금 상황 및 전망 :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한국은행)
- 판매 및 구매대금 결제 현황 :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 차입여건 변화 :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한국은행)

<의견>

-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발간하는 통계 자료와 비교분석 실시 가능
 - 단, 조사대상, 조사기준 시점, 문항 구성 등의 차이를 고려한 비교분석이 필요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의 경우, 본 조사와 유사항목(경영상황 전망, 자금수요 전망)의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항목의 특성과 비교기준의 차이*로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려움
- * 비교기준 차이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전년대비 전망),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전월대비 전망)

5-2. 시계열자료는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통계의 개념, 작성방법, 기준, 조사시기 등이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동일한 작성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이용방법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 통계의 개념 : 국내 중소기업의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및 학계,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음
- 조사기준 : 조사기준 전년도 전국사업체조사결과
 - 전산업 중소기업, 단,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표본제외업종* 제외
 - *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담배제조업(C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항공운수업(H51), 협회 및 단체(S94) 제외
 -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으로 정의
 - 회사법인 중 사업체 구분이 공장, 지사(점), 영업소 및 외국법인의 본·지점 제외
 - 종사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이 아닌 기업체 제외
- 분류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분류
- 조사시기 : 매년 3~7월 실사 진행

<의견>

- 통계의 개념, 작성기준, 기준, 조사시기는 매 차수 마다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도별 조사 결과의 비교와 일관성 있는 통계분석 가능

5-3. 집계결과의 통계표간 일관성을 검토하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작성된 통계표의 일치성 여부(가로·세로 합계, 단위 일치 여부 등)
☒ 항목간 집계결과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불임 문서 참고
 - [불임7]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통계표

<의견>

- 승인된 통계표와 동일한 구성과 형태로 통계표 산출
- 금리, 비중 문항은 '%' 단위로, 금액 문항은 '백만원' 단위로 통일

5-4. 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통계의 개념, 정의, 분류, 작성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하는지 여부
☐ 변경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석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해당 사항 없음(변경 사항 없음)

<의견>

해당 사항 없음(변경 사항 없음)

5-5.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추정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모수 추정식, 추정과정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지 여부
☒ 이상치(outlier), 무응답 처리방법은 적합한지 여부
☒ 가중치 작성방법은 적합한지 여부

<근거자료>

- 붙임 문서 참고
 - [붙임7]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표본 설계 내역서

<의견>

- 통계전문가를 통해 모수 추정식, 추정과정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상치 및 무응답을 처리함

5-6. 자료집계단계에서 생성되는 중간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중간 통계자료(예: 미공표되는 지역별 자료)에 대한 관리단계별 내부 검증 수행 여부
- ☐ 내부 검증단계에 관한 규정 및 검증 지침의 문서화 여부
- ☐ 검증과정의 기록, 분석, 검토 여부

<근거자료>

해당 사항 없음(중간 통계자료 없음)

<의견>

해당 사항 없음(중간 통계자료 없음)

5-7.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증 여부
- ☒ 관련 통계 간의 정합성 검증 여부
- ☒ 최종 통계자료의 현실변화 반영도 검증 여부

<근거자료>

- 내부회의를 통해 최종 통계자료 검증
 - 2019년 7월 4일 회의 진행(참석자 : 발주기관 담당자, 조사PM / 내용 : 문항별 결과치 검토)
- 2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용역수행사 보유 DB 등) 및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발간하는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최종 통계자료의 정합성 및 현실성 검증
 - 예 : 본 조사와 유사항목(경영상황 전망, 자금수요 전망)을 조사하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 전년도 최종 통계결과와 비교 검증

<의견>

- 유사통계 및 관련 자료와 비교시, 조사대상, 조사기준 시점, 문항 구성 등의 차이 고려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의 경우, 본 조사와 유사항목(경영상황 전망, 자금수요 전망)의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항목의 특성과 비교기준의 차이*로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려움
 - * 비교기준 차이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전년대비 전망),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전월대비 전망)

5-8. 공표된 잠정치, 확정치 간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불일치에 대한 사전 점검체계(내부 기준 등) 마련 여부
- ☐ 불일치에 대한 원인 분석 여부
- ☐ 원인분석결과에의 문서화 여부

<근거자료>

해당 사항 없음(공표된 잠정치 없음)

<의견>

해당 사항 없음(공표된 잠정치 없음)

06

문서화 및 자료제공

6-1.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통계작성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 여부
- ☐ 통계작성 절차별 업무매뉴얼 작성 여부
- ☐ 업무내용 변경 시 매뉴얼 보완 여부

<근거자료>

○ 변동사항 및 절차별 업무매뉴얼 없음

<의견>

6-2. 간행물 수록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간행물의 수치 및 표기오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 오류의 분류, 기록, 분석 여부

<근거자료>

-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의견>

- 간행물 최종 인쇄 전 수치 및 표기오류에 대해 전체 확인

6-3.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통계개요, 자료이용방법 등 이용자를 위한 일반 사항 제공 여부
- ☒ 모집단 및 표본설계 관련 정보 제공 여부
- ☒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통계표 설명자료 등 수록 여부

<근거자료>

- 붙임 문서 참고
- [붙임8] 201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보고서

<의견>

-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에 설명자료 제공
- 통계개요, 조사관리, 표본설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정보 제공

6-4.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개편과정, 개편방법, 개편결과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개편 작업 후 자료의 불일치와 같은 자료이용 상 유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해당 사항 없음(개편 사항 없음, 통계의 개념, 정의, 분류, 작성방법 등 동일)

<의견>

해당 사항 없음(개편 사항 없음, 통계의 개념, 정의, 분류, 작성방법 등 동일)

6-5. 조사한 항목을 모두 공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조사항목 및 공표항목의 일치 여부
☐ 미공표 항목이 있는 경우 사유, 용도 등을 명시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The screenshot shows the IBK Research website. The main heading is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al Status Survey). Below the heading, there is a brief description of the survey. To the right, there is a list of reports for the years 2016, 2017, and 2018. Each report entry includes the year, the title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al Status Survey Report), and a 'PDF 내려보기' (Download PDF) button. The 2018 report is the most recent and is highlighted.

<의견>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http://research.ibk.co.kr>)에 제공된 간행물 상의 항목과 조사항목 일치

6-6. 통계자료 공표시 모든 이용자가 조사결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공표와 동시에 자료를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수록하는지 여부
☐ 공표와 함께 DB에 수록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http://research.ibk.co.kr>) > 중소기업통계 > 금융실태조사

<의견>

- 2015~2018년 자료를 간행물(PDF) 형태로 보고서와 통계표 제공
○ 별도의 통계DB 및 엑셀파일 형태의 통계표는 없음

6-7.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 조사실시부터 적절한 기간 이내에 공표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 작성 주기 : (1년)
－ 작성 기준시점(또는 기준기간의 마지막 날)에서 결과 공표일 까지 소요기간
평균 : (10)개월, 최대 : (10)개월

<의견>

6-8. 결과 자료의 공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통계공표 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는지 여부
- ☐ 예고된 통계공표 일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지란이 없어 통계공표 일정 사전 예고 불가

<의견>

- 홈페이지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홈페이지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홈페이지 개편 어려움

6-9.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 보도자료, 보고서, CD-ROM, 인터넷, E-mail 서비스, SMS 등 다양한 형태의 제공여부
- ☐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지 여부
- ☐ 보고서 가격 및 구입방법, 마이크로데이터 구입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한 공지 여부
- ☐ 주요 통계사이트와 링크되어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책자 : 중소기업 금융실태 책자 보고서 매년 1,500부 제작, 공공기관 및 전국 도서관 배포
- 인터넷 : KOSIS 통계표 제공,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PDF파일 제공
- 그 외 제공 요청 시 E-mail을 통한 PDF파일 제공

<의견>

6-10. 자료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개별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지침 마련 여부
- ☐ 개별자료 제공자를 예측할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는지 여부 (식별정보 삭제, 마스킹 등)
- ☐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지 여부

<근거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하지 않고 있음

<의견>

- 인력 부족으로 관리 불가

6-11.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와 작성방법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 ☐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분석,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항목별 국내 유사 통계 및 자료
 - 경기상황 및 전망, 자금사정 및 자금수요 전망 :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제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은행), 기업 경기조사(한국은행), 제조업 경기조사(산업통상자원부), 여성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소벤처기업부)
 - 외부차입금 상황 및 전망 :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한국은행)
 - 판매 및 구매대금 결제 현황 :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 차입여건 변화 :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한국은행)

<의견>

- 유사통계 및 관련 자료와 비교시, 조사대상, 조사기준 시점, 문항 구성 등의 차이 고려
 -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의 경우, 본 조사와 유사항목(경영상황 전망, 자금수요 전망)의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항목의 특성과 비교기준의 차이*로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려움
 - * 비교기준 차이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전년대비 전망),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전월대비 전망)

7-1.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통계작성 절차, 자료수집도구 등이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여부
- ☐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이나 비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조사 완료 후 조사원들의 간담회, 금융 이슈 발굴 등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고, 차년도에 해당 정보에 대한 설문을 추가, 변경

<의견>

7-2.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통계담당 직원이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통계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 여부
- ☒ 통계담당 직원이 바뀌어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유관 기관, 전문협회,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유지 여부

<근거자료>

- 통계 담당자 선정 시 통계 전공 전문직 혹은 행내 인원을 선발
- 행내 통계패키지 이용 강의를 통해 통계지식 자체 교육

<의견>

7-3.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개선을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통계작성 과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내부 및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여부
- ☐ 통계작성 과정별 새로운 방법론 모니터링 여부
- ☒ 통계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 ☒ 통계자료에 대한 언론보도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 은행 내 별도 부서(홍보부)를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 용역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다른 통계의 작성 과정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도출 노력

<의견>

7-4.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통계생산 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여부 (투입 경비 대비 산출물 품질 평가 등)
- ☒ 통계의 효율성, 시의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최신 IT 기술 이용 검토 여부
- ☐ 독립적 외부 전문가에 의한 통계생산 절차 효율성 검토 여부

<근거자료>

- 기업정보 제공 시스템을 이용 조사대상업체가 기입한 정보를 전상상의 정보와 부합하는지 검증

<의견>

통계 개요

- 승인일자 : 1979. 9. 14.(승인번호 303003)
- 작성목적 : 중소기업의 경기전망 뿐만 아니라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및 중소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형태/작성주기 : 조사통계 / 1년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모집단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표본추출틀 :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전수/표본 : 확률표본(층화계통추출)
- 조사대상 : 4,500개 기업체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작성사항 : 기업체 일반현황(18), 경영상황 및 자금전망(12), 신규 자금 조달 현황(35), 향후 조달계획(1), 자금운용현황(3), 판매 및 구매자금 결제현황(7), 은행이용실태(6), 기술금융및M&A등(15) 등

I 검토내용

□ 작성기관 통계 관리현황 점검

○ 작성기관 홈페이지 자료 현황(통계 DB 및 간행물)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홈페이지(research.ibk.co.kr) ‘중소기업 통계 > 금융실태조사’에 2014년~2017년 자료를 간행물(PDF)로 제공하나, 별도 통계 DB는 없음
- 통계명, 조사범위, 작성항목 등의 변경(2014.12.2. 변경승인)으로 통계명 변경 전 자료는 예전 통계명으로 제공(간행물PDF)하고 있음(중소기업통계 > 경기전망조사)

○ KOSIS 통계서비스 현황

- 최근 공표자료인 '17년 자료('18년도 조사실시)가 서비스되고 있으나, “2016년” 카테고리에 2017년 자료가 게시되어 있어 카테고리명을 “2016년 이후”로 변경 필요
- 연도별 카테고리로 통계표를 서비스하여 시계열 비교가 불편함. 분야를 구분하여 서비스 필요(결과표 파트 구분되어 있음)

○ 작성기관 간행물 검토

- 조사개요, 조사설계, 표본설계, 응답기업 현황 및 특성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으며, 조사결과는 그래프로 제공되어 있는 등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행물이 구성되어 있음

○ 해당 통계 자료공표 현황 검토

- 중소기업은행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중소기업통계에 간행물을 공표하고 있으며, KOSIS를 통해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음

	작성기관 DB	KOSIS	e-나라지표	간행물
공표기간	-	'14 ~ '17년	해당없음	'14 ~ '17년

○ 작성기관 사전정보공개 현황 검토

-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공표일정은 별도로 게시하고 있지 않으나, 간행물(조사개요)에 공표시기(조사기준년도 익년 9월)를 공개하고 있음
-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목적, 승인번호, 모집단 및 표본크기, 조사일정을 항시 공개하고 있으나, 승인번호와 조사일정이 승인내역과 불일치함

	작성기관 홈페이지	승인내역
승인번호	30303	303003
조사일정	3월1일에서 4월30일 사이	조사기준년도 익년 5~7월

○ 통계공표 결과간의 상호정합성 검토

- KOSIS 통계표와 간행물 수치 간 불일치는 없으나, KOSIS에 누락된 통계표 있음(2건)

통계 테이블명	KOSIS 수록현황	간행물 수록현황	수정사항
금융자산 운용 유/무	-	'17	KOSIS '17년 통계표 누락
클라우드 펀딩(또는 P2P 대출) 자금조달 유/무	'16	'16 ~ '17	KOSIS '17년 통계자료 업데이트 필요

○ 해당통계 승인내역 검토

- (조사기간) '18년 조사기간은 3.22.~7.6.(간행물 조사개요 참조)로, 승인내역(1.1.~6.30.)과 불일치하였으나, '19.5.23일자 변경승인으로 현재는 익년 5~7월로 변경되었음

구 분	실제 조사실시기간	승인내용	검토사항
2017년 (2018년도 실시)	2018.3.22.~7.6.	1.1.~6.30.	미준수(일정 지연)
2018년 (2019년도 실시)	2019.5.~7.	조사기준년 익년 5~7월	

- (공표시기) 9월 공표로 승인받았으나, 공표일정 미준수(간행물 10월 발행 및 KOSIS 11월 입력)
- (공표방법) 보도자료 미공표
- (작성항목) 매년 조사항목 및 결과표를 조금 변경하였으나, '18년 변경승인내역 없음('19년 변경승인 완료)
- (모집단)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으로 승인받았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모집단 정의 변경 필요(종사자 수 → 매출액 기준)
- (결과표) 공표한 모든 통계표의 항목에 모집단 기업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승인된 결과표에는 없는 항목임

		(단위: 개, %)					
구분	항목	모집단 기업 수	매우 호전	다소 호전	동일	다소 부진	매우 부진
전 체		[550,574]	1.7	19.8	37.8	32.5	8.2
산업 대분류	C 제조업	[142,579]	2.3	23.1	34.0	31.7	8.9
	F 건설업	[58,649]	2.8	29.9	41.9	19.1	6.2
	G 도매 및 소매업	[99,674]	1.3	18.7	36.1	36.6	7.4
	H 운수업	[17,574]	0.2	18.9	42.9	26.5	11.4
	I 숙박 및 음식점업	[82,989]	0.7	9.6	27.3	49.3	13.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021]	2.2	29.9	36.9	23.7	7.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27]	4.1	16.1	50.9	26.0	2.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426]	4.5	31.6	38.6	20.4	4.9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187]	1.9	19.4	43.6	29.2	5.8

□ 통계 이용자 편의 관련 점검

○ KOSIS 서비스

- (통계표 역순 재배치) KOSIS 통계표 배열이 통계승인 시 제출한 결과표 및 간행물 통계표 배열의 역순이며, 총괄에 해당하는 통계표가 가장 하단에 배치¹⁾되어 있어 통계표 재배열 필요
- (카테고리명 변경) “2016년” 카테고리에 2017년 자료가 게시되어 있어 최신자료가 2016년으로 인식²⁾되므로, 카테고리명을 “2016년 이후”로 변경 필요
- (분야 구분) 연도별 카테고리로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어 시계열 비교가 불편함. 분야를 구분하여 서비스 필요(결과표 분야³⁾ 구분되어 있음)

1) 통계표 배열	2) 카테고리명	3) 결과 분야
		조사결과 1. 경영상황 및 자금전망 2. 신규 자금조달 현황 3. 자금운용 현황 4. 판매 및 구매자금 결제 현황 5. 은행 이용 실태 6. 기타

○ 작성기관 홈페이지 통계표 서비스

- (엑셀 자료 제공) 중소기업은행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으나, 간행물과 동일한 형식(PDF)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엑셀파일 형태의 통계표 제공 필요



□ 주요 품질진단사항 검토

○ 모집단 및 표본의 대표성 검토

- (모집단 정의) 모집단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이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모집단 정의 변경 필요
- (기업체 정의) 표본추출틀이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로, 조사 시 사업체를 기업체 단위로 변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체와 기업체 연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음
- (표본배분) 총 4,500개 표본을 제조업 2,000개, 비제조업 2,500개로 배분하여 표본추출하고 있으나,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하여 배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음
- (표본규모) 4,500개 중소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4,640개 기업을 조사(’18년도 실시)하였음

○ 무응답 특성 분석 등

- 응답률, 표본대체율 등 무응답 처리 관련 정보 미제공

○ 조사과정의 오류 점검

- 현장조사 수행 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조사를 진행(' 19년도 지침서 참조)하나, 표본추출틀이 중소기업 정의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사대상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큼

○ 시계열 자료의 정확성 점검

- 실태조사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항목이 많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함

□ 관련 통계와의 정합성 검토

○ 관련 통계

- 유사항목(경영상황 및 전망, 자금수요 전망)을 조사하는 중소기업경기 전망조사(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으나, 유사항목이 전망 등 주관적 항목으로, 현황 파악(좋음/나쁨)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려움

【참고사항】 관련 통계 간 비교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작성기관	중소기업은행	주 : 중소기업부 부 : 중소기업중앙회
작성형태	조사통계	조사통계
승인번호	303003	920014
승인일자	1979-09-14	2002-03-22
작성주기	1 년	월
공표주기	1 년	월
작성목적	중소기업의 경기전망 뿐만 아니라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 제공 및 중소기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매월 중소기업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신속히 파악하여 업계의 경영 계획 수립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체계	기업체→조사원→전문조사업체(용역)→IBK기업은행	기업체 → 지역본부(전문조사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부)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fax 및 E-mail 조사병행)
공표방법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
통계간행물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시계열	1999.1분기~2017.	2002.4.~2019.5.
조사항목	기업체 일반현황(18), 경영상황 및 자금전망(12), 신규 자금조달 현황(35), 향후 조달계획(1), 자금 운용현황(3), 판매 및 구매자금 결제현황(7), 은행이용실태(6), 기술 금융및M&A등(15) 등	○ 기업속성 : 일반/혁신형 기업, 수출여부, 대기업납품여부 ○ 경기판단 : 경기전반(업황) ○ 경기변화방향 : 생산, 내수, 수출, 경상이익, 자금사정, 원자재조달 사정 ○ 수준판단 : 생산설비 수준, 제품 재고수준, 고용수준 ○ 기업경영상 애로요인
모집단	우리나라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표본추출틀 : 2017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 중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매출액 5억원 이상 중소기업 (표본추출틀 : 2017년 전국사업체 조사 및 기업체모집단(기업체단위 로 변환))
조사규모	4,500개 (제조업 2,000개, 비제조업 2,500개)	3,150개 (제조업 1,500개, 비제조업 1,650개)

□ '18년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검토

○ 이용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조사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

- 이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않으며, 이용자 만족도조사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
- 주요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의견수렴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 원자료 오류 발생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원자료에 오류가 많이 또는 다소 발견되어 수정한다고 응답
- 원자료 오류 발생 사유 및 오류 유형을 검토하여 오류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단위무응답 관리 강화

- 단위무응답률이 매우 높음(40% 이상)으로 응답
- 단위무응답의 원인 파악 및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단위무응답 실태를 제공하여 통계품질의 특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보고서에 단위무응답률 제공 필요)

Ⅱ 종합의견

□ 모집단 및 표본 대표성 검토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정의가 변경되었으나 기존의 종사자 수 기준을 사용하여 모집단(조사대상)의 정확성 저하
- 표본규모 미준수로 표본추출 등의 표본 대표성 검토 필요
 - 표본규모 4,500개, 실제조사 4,640개

□ 승인사항 미준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필요

- 공표일정 및 결과표 관련 승인내역 준수 필요
- 작성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내용 현행화 및 엑셀파일 제공 필요

□ 자체통계품질진단 '주의' 등급 관련 개선 필요

- 이용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조사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 오류 유형별 발생 방지 방안 마련(사례집, 현장조사 수행지침 등)
- 단위무응답 관리 강화(원인 파악 및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Ⅲ 조치계획

□ 모집단 및 표본 대표성 검토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모집단 정의 변경 필요(종사자 수 → 매출액)
- 표본배분 및 표본규모 명확화 필요
 - 제조업/비제조업 배분 기준 제시 및 표본규모 준수 필요

□ 승인사항 미준수에 따른 조치 필요

- 공표일정 미준수로 공표시기 현행화 필요
- 승인된 결과표 준수 또는 현재 공표하는 결과표*로 변경승인 필요

* 모든 통계표에 모집단 기업수 제시하고 있음

□ 이용자 편의 제고 필요

- KOSIS 통계표 재배열 또는 분야 구분하여 서비스 필요
- 작성기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현행화 필요(승인번호, 조사일정)
- 작성기관 홈페이지 자료 게시 시 ‘통계편’은 엑셀파일 형태 제공

제정 통계청훈령 제527호 2019. 8.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작성기관”이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말한다.
2. “조사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업무를 민간단체 등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용역, 대행 등과 같이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식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통계작성기관의 조사통계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수탁기관이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제2장 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실태 점검)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을 직접 선정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사·자문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통계조사의 전체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회사규모 및 재무상태 여부
2. 통계조사에 대한 사업실적 및 위탁하고자 하는 통계와 유사한 분야의 조사 실시에 대한 경험 여부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인력의 보유 여부
4.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5.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입력, 처리, 분석 등의 시스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조사 목적·대상·항목 등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
7.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진단 점검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제3장 조사단계별 점검사항

제5조(조사 기획)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기획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통계조사 목적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2.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조사단위(응답대상)의 적절성 여부
3.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중복조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료(통계법 제18조제2항)나 다른 통계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4. 표본조사 경우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국 또는 시도 등 목표수준에 적절한 표본규모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목표모집단	조사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모든 조사 단위들의 집합 (예: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모집단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하고 표본추출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단위들의 집합 (예: 조사가 어려운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

5. 조사실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혹서·혹한기, 농번기 등 계절적 요인, 국가적 행사와 겹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6.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결과공표 등 조사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여부

제6조(조사표 설계 및 지침서 작성) ①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표 설계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조사표는 조사명칭, 조사목적, 조사기관, 조사의 법적근거, 국가통계승인마크, 통계작성승인번호, 비밀보호 규정(통계법 제33조), 작성 및 회신방법, 연락처, 작성 문의 및 협조에 대한 감사 표현 등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2. 조사표의 항목구성은 조사목적에 맞는 결과물 생산에 필요한 내용과 응답자 관련 사항 및 기본항목 등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3. 조사표는 조사방법(면접·전화·인터넷 조사 등)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주기적 조사인 경우 일관성과 시계열 유지가 가능한지, 통계용어·분류기준 등은 통계청의 표준분류 체계를 따랐는지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4. 조사표 작성(안)에 대해 조사표 인지실험을 하거나 시험조사를 거쳐 항목 용어와 구성, 소요시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5. 조사항목 및 조사표에 대한 결정시 관련 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하였는지 여부
- ② 통계작성기관이 조사지침서 작성 업무를 위탁한 경우 조사 목적과 대상, 조사 체계, 조사원의 수행업무, 조사방법별 조사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조사불응시 대처요령, 조사표 내용검토 요령과 조사표 정리 제출방법, 조사용어 해설 등 조사관련 설명 자료를 포함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실시) ① 통계작성기관은 응답자가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 및 신뢰감을 가지고 조사에 응하도록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되는 매체를 활용하여 통계조사명, 조사 목적, 조사 내용, 수탁기관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은 정확하고 표준화된 조사를 위해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사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조사지침서·현장조사 요령서 등을 구비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고 통일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조사원이 조사 목적과 내용, 무응답 유형별 대응, 표본 적격성과 대체 요령 등을 정확히 숙지하였는지 여부
 3. 응답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재조사하는 절차 및 요령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4.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교육하고 서약서 등을 받았는지 여부
- ③ 통계작성기관은 조사 기간 중 수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사진척 상황
2. 조사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조치 결과
3. 조사명부 변동여부, 표본대체 건수 및 사유 등 현황
4. 주요 착오사례, 특이사례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전달 결과
5. 조사항목 누락, 항목 간 불일치, 조사원별 상이한 응답패턴 등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
6. 현장조사 누락, 조사표 임의기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조치 결과

제8조(자료처리 및 분석) 통계작성기관이 자료처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처리 계획 및 일정의 적절성 여부
2.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검증을 위해 내용검토 요령서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3. 조사자료 입력방법 및 입력오류 최소화 방안 수립의 적절성 여부
4. 단위무응답 및 항목무응답에 대한 처리방법의 적절성 여부

단위무응답	조사문항 전체에 대해 응답하지 않음
항목무응답	조사문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응답하지 않음

5. 통계자료 분석 시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는지 여부
6. 모수추정 및 자료분석 등에 있어서 가중치, 계절요인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7. 시계열 분석 시 연도 간 동일시기 비교(전년동월비), 직전시기 비교(전월비) 등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8. 그래프 등의 그림도표는 정보전달의 정확성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9. 당초 조사목적에 맞는 통계표들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9조(통계공표 및 이용) 통계작성기관이 위탁한 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이용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
2. 통계 결과표의 수치, 통계표, 용어, 단위 등 확인 사항
3. 공표 시 정확한 통계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통계법시행령 제42조제2항)
4. 신속 편리한 통계이용을 위해 DB 구축 등 필요한 조치 사항
5.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제공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조사결과 관리)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작성에 관한 위탁업무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조사설계서(또는 사업계획서)
2. 표본설계서 및 대체표본을 포함한 명부 일체
3.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 요령서 등)
4. 조사표 원본(또는 폐기 등에 관한 계획)
5. 조사결과 원자료,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및 파일설계서

원자료 (raw data)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화일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제거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
통계기초자료 (micro data)	원자료(raw data)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하여 공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
파일설계서	자료의 구조를 나타내는 설명서(예, 조사표문항·항목명·코드·코드명, 시작컬럼, 길이 등을 포함)

6. 내용검토 요령서
7. 현장조사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 가. 현장조사 진행상황
 - 나. 응답률 현황
 - 다. 표본대체 현황(대체 시 표본 방문횟수, 대체사유 등)
 - 라.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내용 등
8. 자료처리 보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 가. 자료집계 및 분석 시 사용한 통계기법 및 명령문
 - 나. 변수에 대한 설명(단위, 파생변수 계산식 등)
 - 다. 오류 유형별 원인과 처리결과
 - 라. 무응답에 대한 대체방법
 - 마. 가중치
 - 바. 주요 항목의 정확성 지표(표준오차, 변동계수 등)
 - 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추정량 시산 점검 확인서
9.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제4장 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11조(비밀 보호 및 통계종사자 의무) ① 통계작성기관은 조사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 처리현황, 통계자료파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의 통계종사자나 통계종사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조사표류 반출입 및 보관 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조사표 등의 복사, 대여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3. 취합된 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파일의 복제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
5. 사용목적이 완료된 자료의 삭제 및 입출력 매체의 폐기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조사의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조사 관련자의 비밀보호 유지의무(서약서 작성 포함)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 기한) 통계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8.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통)

- (복수응답) 복수응답 선택항목이 많은데, 질문의 목적 등을 검토하고 복수응답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 있음
→ 복수응답이 부적절할 경우, ‘주된’ 보기항목을 선택하도록 지시 변경
- (항목 번호) 번호부여 체계 검토 : 24-0, 25-0
→ 24와 25로 변경하고 이후 항목에 하위항목 번호(24-1, 25-1) 부여
- 불필요한 이동 지시 삭제 또는 이동 지시 명확화
예) 불필요한 이동 지시 : (문21) 이동지시(문 22로 이동), (문24-0) 이동지시(문24로 이동), (문25-0) 이동지시(문25로 이동) 불필요
- 유사항목은 연계하여 조사하는 방안 검토
예) ‘(36-1) 신규차입금 중 클라우드 펀딩 기반 금액 비중’ 은 ‘(문8)의 신규조달금액의 원천별 비중’ 항목에서 파악할 필요 있음

□ (표지)

- (수출액 비중 용어 수정)
2018년 매출 중 수출 비중 → 2018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대표자 연령 응답기준 명확화)
예, 연령 → 연령(만)

□ (문3-2) 보기항목 구분 적절성 검토

- ‘③ 비은행금융기관 차임’ 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례인식 및 구분이 모호할 수 있음
: 문8의 지침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에 제2금융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분류기준 등이 변하고 있어 응답자의 정확한 인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④ 사채(대부업체, 친인척, 지인, 친구 포함)’ 보기항목에서 대부업체와 개인투자자의 특성이 상이할 수 있어 같은 항목에 포괄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 (문3-3) 보기항목 내용 검토

- ‘④ 시설투자 계획 없음’ 내용 표현 검토 → ‘시설투자 비용 감소’
- ‘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보수적인 자금운용’ : 다른 보기항목 내용과 배타적이지 않음

□ (문4-1) 질문 표현 검토

- 현재 귀사가 외부차입금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귀사가 외부차입금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5, 문6) 문4에서 외부차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가 문5와 문6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자금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문5와 문6의 ‘외부자금조달 사정’에 응답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임

□ (문8) 질문 표현 검토 (문7과 질문 표현 일치)

- ‘2018년 중 귀사가 조달한~’
→ ‘2018년 중 귀사가 신규로 조달한~’

□ (문9) 지침에 ‘문8에서 은행, 정책자금,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신규자금을 조달한 경우만 기입해 주세요.’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책자금’ 응답란 없음

□ (문14-1, 문14-2) 문14-2는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음 → 문14-1에서 ‘①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응답한 경우에 이동하도록 이동지시 추가

□ (문18) 보기항목 내용 검토

- ④ 전혀 계획 없음 → ④ 계획 없음
- ⑤ 해당사항 없음 : ‘④ 계획 없음’ 과 ‘⑤ 해당사항 없음’ 응답 구분 모호 → ‘⑤ 해당사항 없음’ 항목 삭제 고려

□ (문22) ‘귀사의 여유자금을 금융자금으로 운용하고 계시다면~’ 질문하고 있음

→ 귀사의 여유자금을 금융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행 질문 필요함

□ (문32-1, 문36) 신규차입금액 중 기술금융과 클라우드 펀딩 기반 금액의 비중에 대한 질문으로, 문8의 신규조달 자금의 원천별 비중 항목과의 관계 검토 필요

→ 문8에서 전체 신규차입금액에 기술금융이 포함되도록 항목 구성 고려

□ (문33) ‘③ 해당사항 없음’ 보기항목 불필요

붙임6

마이크로데이터 점검결과(마이크로데이터과 · 연구진 공동 점검)

□ (점검 대상): 2019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2018년 자료 기준)

- 공표 통계표 104종 외 작성기관이 추가 관리하는 통계표 71종에 대한 점검 결과 포함

조사영역수	항목개수	코드개수	데이터건수	비교기준	수집유형	자료형태
1	370	262	4,601	보고서	기관직접수집	엑셀

□ 점검 결과

- 유효성 부문

Null ¹⁾	길이(Length) ²⁾	타입(Type) ³⁾	코드(Code) ⁴⁾
23	0	0	0

1) Null : 마이크로데이터내의 항목이 모두 Null인 경우

2) 길이(Length) : 마이크로데이터내의 항목값의 길이가 메타파일설계서에서 정의된 길이와 다른 경우

3) 타입(Type) : 마이크로데이터내의 항목값의 타입(코드, 숫자, 문자)이 다른 경우

4) 코드(Code) : 마이크로데이터내의 항목값이 메타파일설계서 코드값과 다르거나 없는 코드값이 존재하는 경우

- 집계표 부문

구분	일치율 (B/A)	집계표 수			점검항목(중복)	
		소계(A)	일치*(B)	불일치		
전체	86.9%	175	152	23	1. 항목없음	8
					2. 수치불일치	15
					3. 계산식모름	0
	84.6%	104	88	16	1. 항목없음	5
					2. 수치불일치	11
					3. 계산식모름	0

* 소수점차이 포함하여 통계표 내 모든 값이 마이크로데이터 점검 결과와 일치한 경우

※ 점검항목 설명

1. 항목 없음 : 집계가능 항목 없음. ex) 가중치항목, 집계 표측 항목
2. 수치불일치 : 제공불가능(집계결과와 0.3이상 차이)
3. 계산식 모름 : 집계 계산식 알 수 없음
4. 소수점차이 : 제공가능(집계결과와 0.2이하 차이)

□ 원인 분석

- 항목없음(총 8건) : 각각의 집계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점검불가

《19년》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 여부*	《19년》 2018년 매출 중 수출 비중 (%)
《19년》 기업구분	《19년》 영업구조
《19년》 주 사업장 소유형태	《19년》 상시근로자수_남성*
《19년》 2018년 연간 매출액 (백만원)	《19년》 상시근로자수_여성*

* 미승인 집계표(3건)

- 수치불일치(총 15건)

《19년》 신규 조달자금 담보형태별 평균 대출금리(%)-은행_신용보증서 담보대출*
《19년》 신규 조달자금 담보형태별 평균 대출금리(%)-비은행금융기관_담보대출*
《19년》 신규 조달자금 담보형태별 평균 대출금리(%)-비은행금융기관_신용보증서 담보대출*
《19년》 신규 조달자금 담보형태별 평균 대출금리(%)-비은행금융기관_신용대출*
《19년》 정책자금 받은 이유(복수)
《19년》 신규대출 받은 비은행금융기관 유형(복수)
《19년》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이유(복수)
《19년》 신규 사채 조달 경로(복수)
《19년》 사채 조달 이유(복수)
《19년》 기업공개/상장 또는 유상증자 경로
《19년》 계열관계 회사와 거래한 대여금액 유무**
《19년》 2019년 중 외부자금 조달계획 금액(백만원)- 1. 은행_전체
《19년》 2019년 중 외부자금 조달계획 금액(백만원)- 2. 비은행금융기관_시설자금
《19년》 자사 매각 고려 이유(복수)
《19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이유(복수)

* 1개 집계표로 승인받았으나, 4개 집계표로 관리

** 미승인 집계표(1건)

붙임7

항목별 활용가능 행정자료 및 판단결과표(행정자료관리과)

작성항목명	행정자료명	관련항목명	관련서식	보유기관	활용가능여부 *활용이 곤란한 사유
일 반 현 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타행정자료와의연계를위해직접조사 필요)
기업명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상호(법인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기업형태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기업구분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설립연월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개업일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상장 및 외감 여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자료	종류별 구분 및 외감대상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주 사업장 소유형태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사업장구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소재지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사업장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업종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사업체현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품목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사업체현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매출액	법인및개인사업자 소득신고자료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매출액 중 수출비중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영업구조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하도급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성명(대표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대표자 성별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주민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대표자 연령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자료	주민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국세청	활용가능
상시근로자 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신고서, 국민연금가입사업장내역	근로자수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활용가능
세 부 문 항					
1. 전년 대비 올해의 전반적 경영상황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1. 경영상황 호전 원인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2. 경영상황 부진 원인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 올해 대비 내년의 전반적 경영 상황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 전년 대비 올해의 자금 수요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1. 자금 수요 증가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2. 자금 증가수요 조달계획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3. 자금 수요 감소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4. 외부차입금 유무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재무상태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국세청	활용가능
4-1. 외부차입금 없는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5. 전년 대비 올해의 외부자금조달 사정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6. 올해 대비 내년의 외부자금조달 사정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7. 신규 자금조달 원천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8. 신규 자금조달 원천별 비중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9. 신규 자금조달의 담보 형태별 평균 대출 금리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0. 전년도 신규대출 신청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0-1. 신규대출 미신청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1. 신규대출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1-1. 신규대출 받은 은행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1-2. 신규대출 건수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1-3. 신규대출 사용처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1-4. 주거채은행에서 신규대출 받지 않은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2. 전년 대비 올해의 차입여건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3. 신규대출의 거절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3-1. 신규대출 거절 은행의 유형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3-2. 신규대출 거절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4. 신규 정책자금 대출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4-1. 대출받은 정책자금 종류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4-2. 신용보증서 발급 기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4-3. 정책자금의 평균 대출 금리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4-4.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4-5. 정책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5.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5-1. 대출받은 비은행금융기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5-2.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6. 사채를 통한 신규 자금조달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6-1. 사채 조달 원천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6-2. 사채의 평균 차입금리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6-3. 사채 조달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7. 주식·회사채를 통한 신규 자금 조달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7-1. 주식·회사채를 통한 자금조 달 방식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17-2. 기업공개/상장, 유상증자 경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전 자공시자료	영리법인 상장 종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	국세청 금융위 원회	활용가능
17-3. 주식·회사채를 통해 신규 자 금조달을받지 않은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8. 주식·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계획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9. 계열사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전 자공시자료	영리법인 상장 종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	국세청 금융위 원회	활용가능
19-1. 계열사와의 자금거래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19-2. 계열사와거래한자금의총금액 과평균차입/대여금리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0. 향후 외부자금 조달계획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1. 여유자금 운용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2. 여유자금의 금융자산별 운용 비중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3. 금융자산 운용 시 중요 고려 사항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4-0. 판매대금 수취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4. 판매대금 수취 형태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4-1.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약속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의 활 용처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4-2.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약속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의 부도로 자금 회수가어려웠던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4-3.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약속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의 평균 지급 기간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4-4. 금융기관에서 약속어음 또 는 외상매출채권 등의 할인 시 애 로사항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5-0. 구매대금 결제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25. 구매대금 결제 형태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25-1. 구매대금으로 결제한 약속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의 평균 지급 기간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26. 주거래은행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27. 주거래은행과의 거래 기간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28. 주거래은행 선택 시 고려사항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29. 주거래은행의 전반적 만족도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0. 대출거래를 하는 은행 개수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1. 은행 대출 시 불편 사항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2. 기술금융 받은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2-1. 신규차입 금액 중 기술금융 비중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32-2. 기존 대출 대비 기술금융의 만족도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2-3. 기술금융의 개선 사항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3. 향후 기술금융 이용 의향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4. 인수합병 경험 혹은 진행, 고려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4-1. 인수합병 목적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5. 자사의 매각 고려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5-1. 자사의 매각 고려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6. 클라우드 펀딩 기반을 통한 자금조달 경험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6-1. 신규차입 금액 중 클라우드 펀딩 기반의 금액 비중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37.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의향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7-1.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이유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8. 상생결제 방식 경험 여부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응답자경험/의식항목)
38-1. 상생결제 방식에 의해 받은 대금의 비율					활용불가 *행정자료없음(행정자료범위외)

붙임8

파라미터 양식

조사명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	--	-------	--	------	--

{ 재점촉 예정: 해당 회차 종료
 { 마지막 점촉: 11 번으로

I. 일반사항

1 점촉회차	* 점촉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는 최종방문 결과를 '4회차 이상' 란에 기입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상
2 점촉일	* 예시: 07.22, 10.15				
3 점촉시간	* 예시: 09:00, 19:50				
4 점촉시도결과	① 점촉성공 → 5 번으로 ② 부재 ③ 대상처 진입저지 ④ 기타()				
5 점촉대상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6 점촉대상자 연령대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7 조사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8 조사 수행 결과	① 조사완료 ② 부분적 완료 → 8-1 번으로 ③ 조사거부 → 8-2 번으로				
8-1 조사표 작성 방법	① 면접 ② CATI ③ 전화 } 9 번으로 ④ CASI ⑤ 이메일 ⑥ FAX ⑦ 기타()				
8-2 조사거부이유	① 조사에 관심이 없음 ② 불편한 시간에 방문 ③ 정보보호(자료보안문제) ④ 정부불신 ⑤ 내부사정 ⑥ 귀찮음 ⑦ 본사(상사)의 반대(비협조) ⑧ 기타() -				
9 조사 시작 시간	8-1 번에서 ①,②,③일 경우만 작성				
조사 완료 시간					

II. 최종 응답자 관련 사항

10 응답 선호시간	① ~08:59 ② 09:00~10:59 ③ 11:00~12:59 ④ 13:00~14:59 ⑤ 15:00~16:59 ⑥ 17:00~18:59 ⑦ 19:00~20:59 ⑧ 21:00~ ⑨ 모두 가능
11 응답자 특성 (해당사항 모두 선택)	① 적극적 참여 ② 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고 생각 ③ 조사로 귀찮아지는 것은 원치 않음 ④ 사전 약속 했으나 불이행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많음 ⑥ 반정부적 성향 ⑦ 악의가 있거나 위협적 ⑧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음 ⑨ 이전과 동일한 조사직원 방문 요구 ⑩ 다수의 조사에 참여 중임 ⑪ 조사 참여 중단 요망 ⑫ 기타()

III. 조사 수행을 위한 전략

12 조사 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략 (해당사항 모두 선택)	① 조사 안내문 사전 배부 ② 사전 방문 약속(전화, 문자) ③ 업무적 설득(조사 취지 등) ④ 지속적인 방문 ⑤ 관리자(공무원)와 동행설득 ⑥ 메모 남김 ⑦ 기타()	→ 설문 종료
--	---	---------

IV. 특성 항목

13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면접 ② CATI ③ 전화 ④ CASI ⑤ 이메일 ⑥ FAX ⑦ 기타()

14 사전예약제 실시 여부는?

① 예 [(방법은? ㉠ 면접 ㉡ CATI ㉢ 전화 ㉣ 이메일 ㉤ SNS, 메시지(트위터, 카톡 등))] ② 아니오

붙임9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업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0억원 이하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C24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C28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C32 가구 제조업		120억원 이하			
	C10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80억원 이하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0억원 이하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120억원 이하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20억원 이하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억원 이하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C11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C33 기타 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E36 수도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A 농업, 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5명 미만		
B 광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F 건설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G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H 운수 및 창고업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J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30억원 이하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억원 이하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제외)			30억원 이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C3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0억원 이하	5명 미만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K 금융·보험업		80억원 이하				
L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N76 임대업		30억원 이하				
I 숙박·음식점업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P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자동차용 신품의자 제조업(C30393)은 별도기준
(중소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2019년 수시통계품질진단 진단결과보고서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인	통계청장 강신욱
발 행 처	통계청 통계정책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누리